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홍보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91호

**군산시 홍보물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홍보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8조 및 제130조”를 “제139조 및 제140조”로 한다.

제7조 중 “제12조”를 “제15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서 제작, 발행하는 모든 홍보물 에 유료 광고를 게재하고 지방 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7조(광고 수입금의 처리) 광고 수수료는 지방재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수입으로 처리 한다.</p>	<p>제1조(목적) ----- ----- -----제139 조 및 제140조----- ----- ----- ----- -.</p> <p>제7조(광고 수입금의 처리) ----- -----제15조----- -----.</p>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  
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92호

### 군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홈페이지, 고군산군도 도서지역 정보시스템, 민원처리공개시스  
템”을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1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인터넷시스템” 이라 함은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u>고군산군도 도서지역 정보시스템</u>, <u>민원처리공개시스템</u> 등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p> <p>3. (생 략)</p> <p>4. “인터넷 민원” 이라 함은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u></p> <p>5. “개인정보” 라 함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p>	<p>제3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홈페이지</u>----- ----- ----- ----- -----.</p> <p>3. (현행과 같음)</p> <p>4. “전자민원창구” 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p> <p>5. “개인정보” 라 함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p>

6. (생략)

제5조(운영업무) 인터넷시스템에 운영할 업무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홈페이지 민원실 설치·운영) ① (생략)

②홈페이지 민원실은 민원사무 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 하여야 하며 인터넷 민원 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9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주소ID) ① 시장은 지역 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전자우편 주소(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시장은 전자우편 주소(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고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현행과 같음)

<삭제>

제12조(홈페이지 민원실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2조-----  
-----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93호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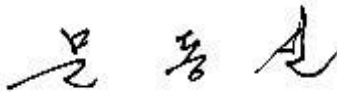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u>행정안전부장관</u>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 -----<u>행정자치부장관</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u>행정안전부장관</u>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17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 ----- ----- -----<u>행정자치부장관</u>----- -----.</p>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94호

### 군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로써야”를 “가로로 써야”로 한다.

제9조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공인의 규격에서 “2. 회계관계관 공무원의 공인”을 “3. 회계관계관 공무원  
의 공인”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3. 계인”을 “4. 계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u>경리관</u>,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u>채무관리관</u>,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p>	<p>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 ----- -----<u>재무관</u>----- -----<u>부</u> <u>채관리관</u>----- -----.</p>
<p>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군산시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u>사무관리규정</u>을 준용한다.</p> <p>②전항 이외의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u>가로써야</u> 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다.</p>	<p>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 ----- ----- ---<u>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u>---.</p> <p>②----- ----- --<u>가로로 써야</u>----- --.</p>
<p>제9조(공고) 공인을 신조, 개각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도보나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u>다만, 전자이미지 관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관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u></p>	<p>제9조(공고) ----- ----- ----- -----</p>

현 행

개 정 안

[별 표] 현행

[별 표] 개정안

공 인 의 규 격

공 인 의 규 격

공 인 의 구 분	규 격	비 고
1. 시장의 공인 <신설 2001.06.15>	3.0cm 정방형	직인
2. 사업소장의 공인	2.1cm 정방형	
가. 4·5급 공무원인 사업소장 공인	1.8cm 정방형	
나. 6급 공무원인 사업소장 공인	2.0cm 정방형	
2. 회계관계관 공무원의 공인	1.8cm 정방형	
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그 분임자와 대리자의 공인		
나. 출납원 및 그 분임자와 대리자의 공인		
3. 계인	길이 3.0cm	
가. 시 본청계인	폭 1.3cm	
나. 시장 보조기관의 계인	“	
다. 사업소 계인	“	
라. 읍·면·동 계인	“	

공 인 의 구 분	규 격	비 고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회계관계관 공무원의 공인		
가. <del>----- 재 무 관 -----</del>		
<del>----- 부채관리관 -----</del>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나. 현행과 같음		
4. 계인		
현행과 같음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95호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군산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의 표를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군산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

구 분	위 치
시 청	<현행과 같음>
옥 구 읍 사 무 소	<현행과 같음>
옥 산 면 사 무 소	<현행과 같음>
회 현 면 사 무 소	<현행과 같음>
임 피 면 사 무 소	<현행과 같음>
서 수 면 사 무 소	<현행과 같음>
대 야 면 사 무 소	<현행과 같음>
개 정 면 사 무 소	<현행과 같음>
성 산 면 사 무 소	<현행과 같음>
나 포 면 사 무 소	<현행과 같음>
옥 도 면 사 무 소	<현행과 같음>
옥 서 면 사 무 소	<현행과 같음>
해 신 동 주 민 센 터	<현행과 같음>
월 명 동 주 민 센 터	월명동
삼 학 동 주 민 센 터	<현행과 같음>
신 풍 동 주 민 센 터	<현행과 같음>
중 앙 동 주 민 센 터	<현행과 같음>
홍 남 동 주 민 센 터	<현행과 같음>
조 촌 동 주 민 센 터	<현행과 같음>
경 암 동 주 민 센 터	<현행과 같음>
구 암 동 주 민 센 터	<현행과 같음>
개 정 동 주 민 센 터	<현행과 같음>
수 송 동 주 민 센 터	<현행과 같음>
나 운 1 동 주 민 센 터	<현행과 같음>
나 운 2 동 주 민 센 터	<현행과 같음>
나 운 3 동 주 민 센 터	<현행과 같음>
소 룡 동 주 민 센 터	<현행과 같음>
미 성 동 주 민 센 터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 군산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 군산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	
구 분	위 치	구 분	위 치
월명동주민센터	영화동	월명동주민센터	월명동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96호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5조”를 “제104조”로 한다.

[별표1] 의회사무국장에 위임하는 사무를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2]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사무를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 위임하는 사무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법 제104조
2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7의2에서 위임한 지방의회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	
3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약정 및 근무기간 연장	

[별표 2]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사무

소 관 과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및 적 용 법 률	비 고
세 무 과	1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징 수 과	1	납세증명서 신청	지방세기본법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2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신청	지방세기본법 제64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복지지원과	1	매(화)장 및 개장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2	개인묘지 설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농 정 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 축 과	1	<현행과 같음>	건축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건축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차량등록 사업소	1	이륜자동차 관련 업무전반 (읍·면)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8항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의회사무국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별표1]</b> 의회사무국장에 위임하는 사무</p>		<p>제1조(목적) -----제104조-----</p> <p><b>[별표1]</b> 의회사무국장에 위임하는 사무</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10%;">번호</th> <th style="width:60%;">위 임 사 무 명</th> <th style="width:30%;">근거 및 적용법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td> <td>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td> </tr> <tr> <td>2</td> <td>6급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 정개, 면직등 임용권반권</td> <td>지방자치법 제95조</td> </tr> <tr> <td>3</td> <td>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td> <td></td> </tr> </tbody> </table>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1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2	6급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 정개, 면직등 임용권반권	지방자치법 제95조	3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10%;">번호</th> <th style="width:60%;">위 임 사 무 명</th> <th style="width:30%;">근거 및 적용법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td> <td>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td> </tr> <tr> <td>2</td> <td>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7의2에서 위임한 지방의회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td> <td>지방자치법 제104조</td> </tr> <tr> <td>3</td> <td>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약정 및 근무기간 연장</td> <td></td> </tr> </tbody> </table>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1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2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7의2에서 위임한 지방의회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	지방자치법 제104조	3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약정 및 근무기간 연장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1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2	6급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 정개, 면직등 임용권반권	지방자치법 제95조																																																												
3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1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2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7의2에서 위임한 지방의회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	지방자치법 제104조																																																												
3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약정 및 근무기간 연장																																																													
<p><b>[별표2]</b>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사무</p>		<p><b>[별표2]</b>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사무</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10%;">소관과</th> <th style="width:10%;">일련번호</th> <th style="width:40%;">위 임 사 무 명</th> <th style="width:20%;">근거 및 적용법률</th> <th style="width:1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세무과</td> <td>1</td> <td>재산세 과세대상 작성 &lt;삭제 2001.12.15&gt;</td> <td>시세부과징수규칙 제99조</td> <td></td> </tr> <tr> <td>2</td> <td>납세관리인 선정 &lt;삭제 2001.12.15&gt;</td> <td>지방세법 제37조제3항 시세조례 제20조</td> <td></td> </tr> <tr> <td>3</td> <td>개간농지세 면제 신청 &lt;삭제 2001.12.15&gt;</td> <td>지방세법 제20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53조</td> <td></td> </tr> <tr> <td>4</td> <td>농지세 감면 신청 &lt;삭제 2001.12.15&gt;</td> <td>지방세법 제20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52조</td> <td></td> </tr> <tr> <td>5</td> <td>가옥 건축 신고 &lt;삭제 2001.12.15&gt;</td> <td>지방세법 제192조 시세조례 제23조</td> <td></td> </tr> <tr> <td rowspan="2"></td> <td>1</td> <td>지방세 미과세 신청</td> <td>지방세법 제3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2조</td> <td></td> </tr> <tr> <td>2</td> <td>지방세 완납 및 징수유예 증명 발급 신청</td> <td>지방세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20조</td> <td></td> </tr> </tbody> </table>		소관과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비고	세무과	1	재산세 과세대상 작성 <삭제 2001.12.15>	시세부과징수규칙 제99조		2	납세관리인 선정 <삭제 2001.12.15>	지방세법 제37조제3항 시세조례 제20조		3	개간농지세 면제 신청 <삭제 2001.12.15>	지방세법 제20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53조		4	농지세 감면 신청 <삭제 2001.12.15>	지방세법 제20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52조		5	가옥 건축 신고 <삭제 2001.12.15>	지방세법 제192조 시세조례 제23조			1	지방세 미과세 신청	지방세법 제3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2조		2	지방세 완납 및 징수유예 증명 발급 신청	지방세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20조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10%;">소관과</th> <th style="width:10%;">일련번호</th> <th style="width:40%;">위 임 사 무 명</th> <th style="width:20%;">근거 및 적용법률</th> <th style="width:1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세무과</td> <td>1</td> <td>개발주택가격 확인서</td> <td>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td> <td></td> </tr> <tr> <td rowspan="3">징수과</td> <td>1</td> <td>납세증명서 신청</td> <td>지방세기본법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td> <td></td> </tr> <tr> <td>2</td> <td>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신청</td> <td>지방세기본법 제64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td> <td></td> </tr> <tr> <td>3</td> <td>지방세 세무별 과세증명서 신청</td> <td>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td> <td></td> </tr> </tbody> </table>			소관과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비고	세무과	1	개발주택가격 확인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징수과	1	납세증명서 신청	지방세기본법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2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신청	지방세기본법 제64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3	지방세 세무별 과세증명서 신청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소관과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비고																																																										
세무과	1	재산세 과세대상 작성 <삭제 2001.12.15>	시세부과징수규칙 제99조																																																											
	2	납세관리인 선정 <삭제 2001.12.15>	지방세법 제37조제3항 시세조례 제20조																																																											
	3	개간농지세 면제 신청 <삭제 2001.12.15>	지방세법 제20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53조																																																											
	4	농지세 감면 신청 <삭제 2001.12.15>	지방세법 제20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52조																																																											
	5	가옥 건축 신고 <삭제 2001.12.15>	지방세법 제192조 시세조례 제23조																																																											
	1	지방세 미과세 신청	지방세법 제3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2조																																																											
	2	지방세 완납 및 징수유예 증명 발급 신청	지방세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소관과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비고																																																										
세무과	1	개발주택가격 확인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징수과	1	납세증명서 신청	지방세기본법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2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신청	지방세기본법 제64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3	지방세 세무별 과세증명서 신청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소관과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및 적 용 법 률	비고
복 지 과	1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2	의료보호증의 변경 확인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3	매(화)장 신고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	
	4	개장 신고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제2항	
	5	사설묘지(중종, 문종, 가족, 개인) 설치 허가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6	묘지이외의 토지(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등에 대한 개장 신고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7	무연분묘 개장 허가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청 소 과	1	분묘 이장 신고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1	대형(다량)폐기물 신고 접수 및 수거수수료 부과 징수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24조	
농 정 과	1	농지전용 신고(읍면)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15조	
	2	농지일시 전용(읍면)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15조	
	3	관상수 식재 및 제배 신고(읍면)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15조	
건 축 과 <개정 2009.06.22>	1	건축 신고 업무(옥도면)	건축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건축 신고의 수리(옥도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옥도면)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옥도면)	건축법 제9조 건축법 제15조 건축법 제72조	
	2	위반 건축물 적발(옥도면)	건축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3	건축물대장 초등본의 교부 및 열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 제11조	
소관과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및 적 용 법 률	비고
복 지 지원과	1	매(화)장 및 개장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2	개인묘지 설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농 정 과	1	농지전용 신고(읍면)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15조	
	2	농지일시 전용(읍면)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15조	
건 축 과 <개정 2009.06.22>	1	건축 신고 업무(옥도면)	건축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건축 신고의 수리(옥도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옥도면)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옥도면)	건축법 제9조 건축법 제15조 건축법 제72조	
	2	위반 건축물 적발(옥도면)	건축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3	건축물대장 초등본의 교부 및 열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 제11조	
차량등록 사업소	1	이륜자동차 관련 업무전반(읍면)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8항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97호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별표]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중 “2.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의 표를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 2.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신평동	1~4	18	<현행과 같음>
송평동	5~7	13	<현행과 같음>
문화동	8~13	28	<현행과 같음>
문화동	14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916의1~39, 935(셀브르타운)
		5	<현행과 같음>
문화동	15~20	26	<현행과 같음>
20	90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조촌동	1~14	60	<현행과 같음>
경장동	15~21	29	<현행과 같음>
조촌동	22~23	11	<현행과 같음>
조촌동	24	1	828, 832, 836~837
		2	833~835
		3	841~843
		4	844~845
		5	847, 850
조촌동	25~31	36	<현행과 같음>
조촌동	32	1	3931의 1(타워씨미트 101동 101~2102호), 상가
		2	3931의 1(타워씨미트 102동 101~2403호)
		3	3931의 1(타워씨미트 102동 104~2404호, 103동 101~2402호)
		4	3931의 1(타워씨미트 103동 103~2004호)
조촌동	33	1	3931의 1(타워씨미트 104동 101~2503호)
		2	3931의 1(타워씨미트 104동 104~2504호, 105동 101~2502호)
		3	3931의 1(타워씨미트 105동 103~2504호, 106동 101~2101호)
		4	3931의 1(타워씨미트 106동 102~2404호)
조촌동	34	1	3931의 1(타워씨미트 107동 101~2403호), 상가

동명	통	반	관할지번
		2	3931의 1(타워씨미트 107동 104~2404호, 108동 101~2302호)
		3	3931의 1(타워씨미트 108동 103~2104호, 109동 101~2101호)
		4	3931의 1(타워씨미트 109동 102~1404호)
	35	1	851~852
		2	848~849, 853, 862
		3	855~856
		4	859~860, 866~868
		5	863~865
		6	888~890
35	159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수송동	1	3	<현행과 같음>
	2	1	852~857
		2	858~885, 17의23, 16의27, 18의11·12, 18의37~43, 19의13·38~42, 20의30~45
	3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77의 5~38,40~58, 78,81,86,88,90,94,96,99~102, 77의 104~116,127~138,146, 63의 6,69,149	
4~16	49	<현행과 같음>	
미장동	17~22	22	<현행과 같음>
수송동	23~24	11	<현행과 같음>
지곡동	25~33	37	<현행과 같음>
수송동	34~43	43	<현행과 같음>
미장동	44~45	10	<현행과 같음>
수송동	46~51	28	<현행과 같음>
미장동	52~55	24	<현행과 같음>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수송동	56	1	827~828, 831~833
		2	834~851, 13의74·76·78, 13의94·96, 15의14~39, 16의38~41, 17의14·15, 17의20~22, 17의33~35
	57	1	416의 6, 399의 8, 429의 8 (101동, 상가동)
		2	416의 6, 399의 8, 429의 8 (102동, 103동)
미장동	58	1	58의 36 군산미장아이파크 101동
		2	58의 36 군산미장아이파크 102동
		3	58의 36 군산미장아이파크 103동
	59	1	58의 36 군산미장아이파크 104동
		2	58의 36 군산미장아이파크 105동
		3	58의 36 군산미장아이파크 106동
		4	58의 36 군산미장아이파크 107동
	60	1	58의 36 군산미장아이파크 108동
		2	58의 36 군산미장아이파크 109동
		3	58의 36 군산미장아이파크 113동
	61	1	58의 36 군산미장아이파크 110동
		2	58의 36 군산미장아이파크 111동
		3	58의 36 군산미장아이파크 112동, 상가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지곡동	62	1	607 지곡쌍용예가 101동	
		2	607 지곡쌍용예가 102동	
		3	607 지곡쌍용예가 110동	
	63	1	607 지곡쌍용예가 103동	
		2	607 지곡쌍용예가 104동	
		3	607 지곡쌍용예가 109동, 상가	
	64	1	607 지곡쌍용예가 105동	
		2	607 지곡쌍용예가 106동	
		3	607 지곡쌍용예가 107동	
		4	607 지곡쌍용예가 108동	
		64	261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산북동	1~6	38	<현행과 같음>
개사동	7~8	6	<현행과 같음>
산북동	9~18	35	<현행과 같음>
	19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3543~3547
	20~32	47	<현행과 같음>
개사동	33	2	<현행과 같음>
산북동	34~35	12	<현행과 같음>
내초동	36	3	<현행과 같음>
산북동	37~38	8	<현행과 같음>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산북동	39	1	3644 하나리움 시티 101동 101 ~ 1603호
		2	3644 하나리움 시티 102동 101 ~ 1604호
		3	3644 하나리움 시티 104동 102 ~ 1803호
		4	3644 하나리움 시티 105동 101 ~ 1704호
		5	3644 하나리움 시티 106동 101 ~ 1704호
	40	1	3644 하나리움 시티 103동 201 ~ 1302호, 3644의 상가
		2	3644 하나리움 시티 107동 102 ~ 1703호
		3	3644 하나리움 시티 108동 102 ~ 1802호
		4	3644 하나리움 시티 109동 101 ~ 1804호
		5	3644 하나리움 시티 110동 102 ~ 1804호
	41	1	3644 하나리움 시티 111동 101 ~ 1805호
		2	3644 하나리움 시티 112동 102 ~ 1802호
		3	3644 하나리움 시티 113동 101 ~ 1804호
		4	3644 하나리움 시티 114동 101 ~ 1804호
		41	169
동총계	<b>789</b>	<b>2,583</b>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이·통장의 임무) 이·통장은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p> <p>1. ~ 8. (생략)</p> <p><u>&lt;신설&gt;</u></p> <p>9. (생략)</p>	<p>제5조(이·통장의 임무)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도우미 역할 수행</u></p> <p>10. (현행 제9호와 같음)</p>

[별표]

##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 2.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신평동	1~4	18	<생략>	신평동	1~4	18	<현행과 같음>
송풍동	5~7	13	<생략>	송풍동	5~7	13	<현행과 같음>
문화동	8~13	28	<생략>	문화동	8~13	28	<현행과 같음>
문화동	14	1	914, 914의 18,20 (한신연립)	문화동	14	1	<현행과 같음>
		2	915, 547의2, 5, 548의3, 549의3,9,13,24,29			2	<현행과 같음>
		3	917의 1~5			3	<현행과 같음>
		4	916의1~39			4	916의1~39, 935(셀브르타운)
		5	918의1~9, 919의 1~7, 594의 1~23, 597의 5~10			5	<현행과 같음>
문화동	15~20	26	<생략>	문화동	15~20	26	<현행과 같음>
동계	20	90		20	90		

현행				개정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조촌동	1~14	60	<생략>	조촌동	1~14	60	<현행과 같음>
경장동	15~21	29	<생략>	경장동	15~21	29	<현행과 같음>
조촌동	22~23	11	<생략>	조촌동	22~23	11	<현행과 같음>
조촌동	24	1	828, 832~834, 836	조촌동	24	1	828, 832, 836~837
		2	841~847, 850~852, 855			2	833~835
		3	848~849, 853, 856, 862, 864~865, 888~890, 893			3	841~843
		4	859~860, 866~868			4	844~845
		5	<신설>			5	847, 850
조촌동	25~31	36	<생략>	조촌동	25~31	36	<현행과 같음>
조촌동	32	1	244의 10(송정씨미트 101동 101~2102호), 상가	조촌동	32	1	3931의 1(타워씨미트 101동 101~2102호), 상가
		2	244의 10(송정씨미트 102동 101~2403호)			2	3931의 1(타워씨미트 102동 101~2403호)
		3	244의 10(송정씨미트 102동 104~2404호, 103동 101~2402호)			3	3931의 1(타워씨미트 102동 104~2404호, 103동 101~2402호)
		4	244의 10(송정씨미트 103동 103~2004호)			4	3931의 1(타워씨미트 103동 103~2004호)
조촌동	33	1	244의 10(송정씨미트 104동 101~2503호)	조촌동	33	1	3931의 1(타워씨미트 104동 101~2503호)
		2	244의 10(송정씨미트 104동 104~2504호, 105동 101~2502호)			2	3931의 1(타워씨미트 104동 104~2504호, 105동 101~2502호)
		3	244의 10(송정씨미트 105동 103~2504호, 106동 101~2101호)			3	3931의 1(타워씨미트 105동 103~2504호, 106동 101~2101호)
		4	244의 10(송정씨미트 106동 102~2404호)			4	3931의 1(타워씨미트 106동 102~2404호)
조촌동	34	1	244의 10(송정씨미트 107동 101~2403호), 상가	조촌동	34	1	3931의 1(타워씨미트 107동 101~2403호), 상가

		2	244의 10(송정썬미트 107동 104~2404호, 108동 101~2302호)			2	3931의 1(타워썬미트 107동 104~2404호, 108동 101~2302호)
		3	244의 10(송정썬미트 108동 103~2104호, 109동 101~2101호)			3	3931의 1(타워썬미트 108동 103~2104호, 109동 101~2101호)
		4	244의 10(송정썬미트 109동 102~1404호)			4	3931의 1(타워썬미트 109동 102~1404호)
			<신설>		35	1	851~852
			<신설>			2	848~849, 853, 862
			<신설>			3	855~856
			<신설>			4	859~860, 866~868
			<신설>			5	863~865
			<신설>			6	888~890
동계	34	152		35	159		

현행				개정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수송동	1	3	<생략>	수송동	1	3	<현행과 같음>
	2	1	827~828, 831~832, 834~844, 846~850		2	1	852~857
		2	852~876, 879, 882~884			2	858~885, 17의23, 16의27, 18의11·12, 18의37~43, 19의13·38~42, 20의30~45
	3	1	<생략>		3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5	77의 4~38	5	77의 5~38,40~58, 78,81,86,88,90,94,96, 99~102, 77의 104~116, 127~138,146, 63의 6,69,149			
					4~16	49	<생략>
미장동	17~22	22	<생략>	미장동	17~22	22	<현행과 같음>
수송동	23~24	11	<생략>	수송동	23~24	11	<현행과 같음>
지곡동	25~33	37	<생략>	지곡동	25~33	37	<현행과 같음>
수송동	34~43	43	<생략>	수송동	34~43	43	<현행과 같음>
미장동	44~45	10	<생략>	미장동	44~45	10	<현행과 같음>
수송동	46~51	28	<생략>	수송동	46~51	28	<현행과 같음>
미장동	52~55	24	<생략>	미장동	52~55	2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수송동			<신설>	수송동	56	1	827~828, 831~833
			<신설>			2	834~851, 13의74·76·78, 13의94·96, 15의14~39, 16의38~41, 17의14·15, 17의20~22, 17의33~35
			<신설>		57	1	416의 6, 399의 8, 429의 8 (101동, 상가 동)
			<신설>			2	416의 6, 399의 8, 429의 8 (102동, 103 동)
미장동			<신설>	미장동	58	1	58의 36 군산미장아이 파크 101동
			<신설>			2	58의 36 군산미장아이 파크 102동
			<신설>			3	58의 36 군산미장아이 파크 103동
			<신설>	59	1	58의 36 군산미장아이 파크 104동	
			<신설>		2	58의 36 군산미장아이 파크 105동	
			<신설>		3	58의 36 군산미장아이 파크 106동	
			<신설>		4	58의 36 군산미장아이 파크 107동	
			<신설>	60	1	58의 36 군산미장아이 파크 108동	
			<신설>		2	58의 36 군산미장아이 파크 109동	
			<신설>		3	58의 36 군산미장아이 파크 113동	
			<신설>	61	1	58의 36 군산미장아이 파크 110동	
			<신설>		2	58의 36 군산미장아이 파크 111동	
			<신설>		3	58의 36 군산미장아이 파크 112동, 상가	

현행				개정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지곡동			<신설>	지곡동	62	1	607 지곡쌍용예가 101동	
			<신설>			2	607 지곡쌍용예가 102동	
			<신설>			3	607 지곡쌍용예가 110동	
			<신설>		63	1	607 지곡쌍용예가 103동	
			<신설>			2	607 지곡쌍용예가 104동	
			<신설>			3	607 지곡쌍용예가 109동, 상가	
			<신설>		64	1	607 지곡쌍용예가 105동	
			<신설>			2	607 지곡쌍용예가 106동	
			<신설>			3	607 지곡쌍용예가 107동	
			<신설>			4	607 지곡쌍용예가 108동	
	동계	55	234			64	261	

현행				개정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산북동	1~6	38	<생략>	산북동	1~6	38	<현행과 같음>
개사동	7~8	6	<생략>	개사동	7~8	6	<현행과 같음>
산북동	9~18	35	<생략>	산북동	9~18	35	<현행과 같음>
	19	1	산북3546의 5 성일아파트 101~411호		19	1	<현행과 같음>
		2	산북3546의 5 성일아파트 501~710호			2	<현행과 같음>
		3	산북3546의 5 성일아파트 801~1001호			3	<현행과 같음>
		4	산북 산 37의 2 축협아파트, 3543~3547			4	3543~3547
	20~32	47	<생략>		20~32	47	<현행과 같음>
개사동	33	2	<생략>	개사동	33	2	<현행과 같음>
산북동	34~35	12	<생략>	산북동	34~35	12	<현행과 같음>
내초동	36	3	<생략>	내초동	36	3	<현행과 같음>
산북동	37~38	8	<생략>	산북동	37~38	8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산북동			<신설>	산북동	39	1	3644 하나리움 시티 101 동 101 ~ 1603호	
			<신설>			2	3644 하나리움 시티 102 동 101 ~ 1604호	
			<신설>			3	3644 하나리움 시티 104 동 102 ~ 1803호	
			<신설>			4	3644 하나리움 시티 105 동 101 ~ 1704호	
			<신설>			5	3644 하나리움 시티 106 동 101 ~ 1704호	
					<신설>	40	1	3644 하나리움 시티 103 동 201 ~ 1302호, 3644의 상가
					<신설>		2	3644 하나리움 시티 107 동 102 ~ 1703호
					<신설>		3	3644 하나리움 시티 108 동 102 ~ 1802호
					<신설>		4	3644 하나리움 시티 109동 101 ~ 1804호
					<신설>		5	3644 하나리움 시티 110 동 102 ~ 1804호
					<신설>	41	1	3644 하나리움 시티 111 동 101 ~ 1805호
					<신설>		2	3644 하나리움 시티 112 동 102 ~ 1802호
					<신설>		3	3644 하나리움 시티 113 동 101 ~ 1804호
					<신설>		4	3644 하나리움 시티 114 동 101 ~ 1804호
	동계	38	155				41	169
동총계	<u>776</u>	<u>2,535</u>		동총계	<u>789</u>	<u>2,583</u>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읍·면·동명칭및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98호

군산시읍·면·동명칭및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읍·면·동명칭및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의2”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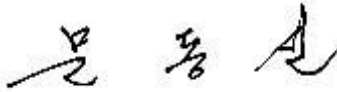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조의2----- ----- -----.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99호

###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군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통·이장”을 각각 “이·통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이장”을 “이·통장”으로, “각호의 1”을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고등학생으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 중 “통·이장”을 “이·통장”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장학금은 공립고등학교 공납금 수준으로 지원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통·이장”을 “이·통장”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통·이장</u> 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 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게 지급하는 <u>통·이장</u> 자녀 장 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의 지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한다.</p>	<p>군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1조(목적) -----<u>이·통장</u>- ----- ----- -----<u>이</u> <u>·통장</u>----- ----- -----.</p>
<p>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u>통·이장</u>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 야 한다.</p> <p>1. <u>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으로</u> <u>직전학기 전과목 학업 성취도</u> <u>평균이 “미” 이상인자</u></p> <p>2. <u>기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u> <u>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u> <u>뛰어난 자</u></p>	<p>제2조(장학생의 자격) ----- <u>이·통장</u>-----<u>호</u>--- ----- -.</p> <p>1. <u>품행이 단정하고 봉사정신이</u> <u>투철한 고등학생으로 읍면동</u> <u>장이 추천한 자</u></p> <p>&lt;삭 제&gt;</p>
<p>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시 <u>통·이장</u> 정수의 15퍼 센트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 에서시장이 결정한다.</p>	<p>제5조(장학생의 정원) ----- -----<u>이·통장</u>----- ----- -----.</p>
<p>제6조(장학금액) (생 략)  &lt;신 설&gt;</p>	<p>제6조(장학금액) ① (현행과 같 음) ② 장학금은 공립고등학교 공납</p>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 5. (생략)
- ② (생략)

금 수준으로 지원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

-----  
 -----  
 -----

1. -----이 · 통장-----  
 -----  
 -----

2. ~ 5.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00호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여 제·개정되는 의안의 예상되는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산시장(이하”를 “군산시의회 의원, 군산시의회 위원회, 군산시장(이하”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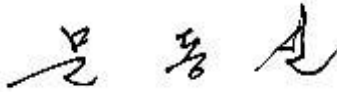
- ③ 군산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군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의회 상정안에 각각 붙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01호

### 군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군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군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운영에 관”을 “운영에 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을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민자유치시설사업”을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명  <u>군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u>조례</u>는 <u>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u>에 의하여 <u>군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② (생략)</p> <p>③위원은 <u>군산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 중에서 <u>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④ (생략)</p> <p>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u></li> <li>2. <u>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u></li> <li>3. ~ 5. (생략)</li> </ol>	<p><u>군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 조례는 「<u>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u>」 제6조 제4항 및 <u>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0항</u> 규정에 따라 <u>군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u>-----<u>운영에 관</u>-----<u>한다.</u></p> <p>제2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그리고 민간투자사업</u>-----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능)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민간투자사업</u>-----              -----</li> <li>2. <u>민간투자시설사업</u> -----              -----</li> <li>3. ~ 5. (현행과 같음)</li> </ol>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02호

군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을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으로, “제21조”를 “제26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영 제21조제1항”을 “영 제26조 제1항”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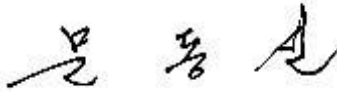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 제26조----- ----- -----.</p>
<p>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 제1항-----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03호

###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때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시보에 게재하되”를 “시보나”로 하고, “방법을 병행하여”를 “방법으로 널리”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때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6조 중 “때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지체 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3]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해당 요금을 적용하여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중 “때에는”을 “경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사전 예고함으로써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경우</u>----- ----- ----- ----- -----.</p>
<p>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생략)</p> <p>② 입법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법안 심사의뢰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p>	<p>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경우</u>----- -----.</p>
<p>제5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기타 필요한 사항</p> <p>② 입법예고문은 <u>시보</u>에 게재하되, 시 홈페이지, 시·읍·면·동 게시판 및 신문·방송 등의 <u>방법</u>을 병행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제5조(예고방법)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p> <p>② -----<u>시보나</u>----- ----- ----- <u>방법</u>으로 -----<u>널리</u>-----.</p>

③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④·⑤ (생략)

제6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제업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생략)

② 시장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③ -----경우

-----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조(예고기간) -----  
-----.  
-----경우-----  
-----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그 밖에 ----- 해당 -----  
-----.

③ ----- 해당 -----  
-----  
없으면-----.

④ -----  
-----  
- 지체 없이 -----.

제9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  
-----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비용 징수에 관하여는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3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해당 요금을 징수하되, 그 징수방법은 시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한다.

제10조(공청회) ①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생략)

-----  
----- 없으면-----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3]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해당 요금을 적용하여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삭 제>

제10조(공청회) ① -----  
-----  
-----  
-----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04호

### 군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를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로 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경제항만국장, 주민복지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회의 통합운영)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군 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 ----- ----- -----.</u></p>
<p>제2조(위원회 구성) ① <u>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11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u></p> <p>② <u>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u></p>	<p>제2조(위원회 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u></p> <p>② <u>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u></p>
<p>③<u>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u></p>	<p>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경제항만국장, 주민복지국장</u></li> <li>2. <u>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u></li> </ol>

④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생략)

②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3. (생략)

<신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한다.

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같은법 시행령 -----  
-----

2.·3.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위원회의 통합운영)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6조(간사) -----  
----- 1명 -----  
-----.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05호

###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군산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세의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6조에 따른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된 시세의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

에 기여한 경우

가. 법 제65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나. 법 제132조에 따른 범칙행위 고발

다. 법 제140조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라.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 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마. 「지방세법」 제 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바.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업무

사.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 법 제68조의 징수촉탁을 받아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③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④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 중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의 1

나. 지난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라.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 ②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되,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 및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공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 등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6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138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군산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남세 지원계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가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일괄 신청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포상금의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신청내용에 불복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해당 절차가 종료되어 해당 세액에 대한 수납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포상금 지급방법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대장비치) ① 포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서류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06호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무인민원발급창구(이하 “기기”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교부)** 기기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할 때에는 행정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교부기관의 관인을 찍어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그 민원사항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사항은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제3조(설치장소)** ① 기기는 다수의 민원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관리·운영자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단, 공동주택 등 특정다수인만 이용할 우려가 있는 곳은 설치를 배제한다.

1. 관공서 등 공공기관
2. 대형병원 및 학교
3. 기타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기기를 설치할 경우 그 설치유무 및 우선순위는 인구밀집도, 효율성, 접근성,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부시장 주재 회의에서 정한다.

**제4조(총괄책임관)** 시장은 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민원봉사과장을 총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게 한다.

1. 기기의 설치·운영에 따른 종합적인 조정
2. 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감독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책임관)** ① 관리책임관은 기기가 설치된 장소의 관할 읍면동장으로 한다. 단, 시청 내부와 산단민원센터에 설치된 기기는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관은 부책임관 및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기기의 운영·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관리 등)** 기기의 관리담당자는 수시로 설치장소를 방문하여 기기 정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산부서 및 유지보수 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월 1회 이상 운영 및 보안상태 정기적인 점검
2. 소모품 관리 및 보충
3. 고장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조치
4. 기기 수수료 정산 및 준비금 관리
5. 발급용지 수불관리 및 기타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7조(수수료)** 수수료는 세외수입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매일 정산하고,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보수)** ① 관리책임관은 기기 장애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② 기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하고, 유지보수 업체는 기기의 유지 및 보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  
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07호

###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  
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 조직  
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법 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에서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의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삭제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 “법 제18조 및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  
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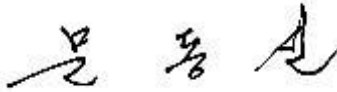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권한의 위임) ① 주민등록 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주민등록에 관한 시장의 권한중 다음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p> <p>1.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p> <p>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p> <p>3. 삭 제</p> <p>4.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p> <p>5. 법 제18조 및 제45조,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p>	<p>제2조(권한의 위임) ① ----- ----- ----- -----.</p> <p>1. 법 제7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p> <p>2.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p> <p>3. 삭 제</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08호

###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평생교육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교육 종사자의 연수 등의”를 “읍·면·동 단위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평생학습 상담 제공”으로 한다.

제2조 제4호 중 “문자해득교육”을 “문자해득교육(이하“문해교육”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실무협의회)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간의 협력 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간의 협력 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제2호 중 “평생학습관”을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로 한다.

제6조 제3호 중 “자치대학”을 “군산새만금아카데”로 한다.

제7조 제③항 중 “4. 그 밖에 평생교육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를 “5. 그 밖에 평생교육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8조 중 같은 조에 제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때

2. 위원의 소속기관 인사 등으로 직위 변경, 전출 등 소관 업무 변경 또는 사업장을 떠나게 된 때

3. 사망,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1조 중 “협의회”를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로 한다.

제14조 중 “제14조 제9호”를 “제14조 제11호”로 하고 “제14조 제9호,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10.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정보화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시장은 시민에게 학교·민간단체·기업 등과 연계한 교육의 정보화 및 평생교육과정을 개발 운영 제공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학습계좌) 시장은 지역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

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중 “제23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학습관에는 제1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둘 수 있다.”를 “제23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읍·면·동 단위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장 중 “군산시자치대학”을 “군산새만금아카데미”로 한다.

제25조 중 “군산시 자치대학 (이하 “자치대학”이라 한다)을”를 “군산새만금아카데미”로 한다.

제26조 중 “자치대학은“을 “군산새만금아카데미는”로 한다.

제28조 중 “ 학령기 동안 경제적, 사회적 환경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은 비문해”를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해교육을 포함한 사회적, 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추기 위해 문해교육을 원하는”로 한다.

제29조 중 “있다.”를 “ 있으며,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로 한다.

제29조 제4호 중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평생학습센터”란 평생교육을 위한 연구, 정책 개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교육 종사자의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p> <p>4. “성인문해교육단체”란 문자해득교육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 및 시설을 말한다.</p> <p>&lt;신 설&gt;</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평생학습센터”란 읍·면·동 단위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평생학습상당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p> <p>4.-----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p> <p>제5조의2(실무협의회)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간의 협력 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p>
<p>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생략)</p> <p>2.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p> <p>3. 군산시 자치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p> <p>4. (생략)</p>	<p>제6조(기능) ----- -----.</p> <p>1. (현행과 같음)</p> <p>2..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p> <p>3.-----군산새만금아카데미-----</p> <p>4. (현행과 같음)</p>

제7조(구성) ①·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④ (생략)

제8조(임기) ①·② (생략)

<신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

제7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때

2. 위원의 소속기관 인사 등으로 직위 변경, 전출 등 소관 업무 변경 또는 사업장을 떠나게 된 때

3. 사망,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 협의회-----  
-----  
-----

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업무)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8. (생략)

<신설>

<신설>

9. (생략)

<신설>

<신설>

-----.  
-----  
-----  
-----.

제14조(업무) -----  
-----.

1. ~ 8. (현행과 같음)

9.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10.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11. (현행 제9호와 같음)

제14조의2(정보화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시장은 시민에게 학교·민간단체·기업 등과 연계한 교육의 정보화 및 평생교육과정을 개발 운영 제공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의3(학습계좌) 시장은 지역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 운영할

제23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학  
습관에는 제14조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둘  
수 있다.

제4장 군산시자치대학의  
설치·운영

제26조(기능) 자치대학은 다음 업  
무를 수행한다.

- 1. ~ 3. (생략)

제28조(대상) 학령기 동안 경제  
적, 사회적 환경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은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제29조(임무) 시장은 성인문해교  
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성인문해교육단체의 문자해  
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5. (생략)

수 있다.

제23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의 설치·운영) 시장은 읍·면  
·동 단위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의 운영과 상담을 제공하는 평  
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군산새만금아카데미의  
설치·운영

제26조(기능) 군산새만금아카데  
미는-----.

- 1. ~ 3. (현행과 같음)

제28조(대상) 일상생활을 영위하  
는데 필요한 문해교육을 포함한  
사회적, 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추기 위  
해 문해교육을 원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적, 성별, 직  
업을 불문한다.

제29조(임무) -----  
-----  
-----  
-----  
-----  
있으며,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 3. (현행과 같음)
- 4. -----문해교육  
-----
- 5. (현행과 같음)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09호

###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①항 중“필요한 경우 군산시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시에 발달 장애성인의 평생학습에 관한 실태를 포함하여 조사”를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로 하고, 제②항 “발달장애성인 교육”를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으로 하며, 제③항 “평생교육 및 실태조사의 세부 항목과 시기 및 기간은”을 “평생교육 시행계획의 내용은”으로 한다.

같은 조에 제④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수립된 평생교육 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제①항 중“ 평생학습 참여를”를 “평생교육 참여를”으로 한다.

같은 조에 제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발달장애 성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된 학습장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제8조 “소유한 사람이라야”를 “소유한 사람으로”로 한다.

제10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군산시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시에 발달장애성인의 평생학습에 관한 실태를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발달장애성인 교육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시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③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및 실태조사의 세부 항목과 시기 및 기간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p> <p>&lt;신 설&gt;</p>	<p>제4조(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 ----- --.</p> <p>③ -----시행계획의 내용----- -----.</p> <p>④ 시장은 수립된 평생교육 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6조(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하여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이하 “학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lt;신 설&gt;</p>	<p>제6조(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① ----- ----- 평생교육-----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은 발달장애 성인의 특</p>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 개항100주년 기념 시민장학회 지원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10호

군산 개항100주년 기념 시민장학회 지원조례 폐지조례

군산 개항100주년 기념 시민장학회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임해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1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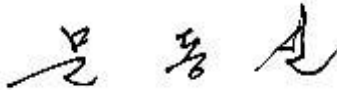
군산시 임해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조례 폐지조례

군산시 임해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12호

###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관장)”을 “(관장 및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매년 입주자 실태조사를 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제4조 중 “저소득 미혼여성 근로자와 무주택세대주인 기혼 남성근로자”를 “저소득 미혼여성 및 기혼여성 근로자 중 무주택세대주”로 한다.

제7조 1항에 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자를 동숙시킨 자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관장) (생략)</p> <p>&lt;신설&gt;</p>	<p>제3조(관장 및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매년 입주자 실태조사를 하여 대책을 수립한다.</p>
<p>제4조(입주대상자)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군산시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미혼여성 근로자와 무주택세대주인 기혼 남성근로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대상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4조(입주대상자) -----</p> <p>----- 및 기혼 여성 근로자중 무주택세대주-----</p> <p>-----.</p> <p>-----.</p>
<p>제7조(임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계약 해지 및 임대기간 연장 거부를 할 수 있다.</p> <p>1. ~ 8. (생략)</p> <p>&lt;신설&gt;</p> <p>② (생략)</p>	<p>제7조(임대의 취소 등) ① -----</p> <p>-----</p> <p>-----.</p> <p>1. ~ 8. (현행과 같음)</p> <p>9.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자를 동숙시킨 자</p> <p>② (현행과 같음)</p>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13호

###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4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항만하역사업자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군산항내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사업자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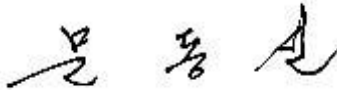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lt;신설&gt;</u></p> <p>4. (생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항만하역사업자란</u>” 「<u>항만운송사업법</u>」에 따라 <u>군산항내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사업자를 말한다.</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조경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14호

### 군산시조경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조경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녹지대 및 가로수”를 “녹지대”로 한다.

제3조 중 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 중 “건축법 제32조”를 “건축법 제42조”로 한다.

제5조 중 “건축법 제32조”를 “건축법 제42조”로 한다.

제6조 중 “건축법 제32조”를 “건축법 제42조”로 한다.

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중 “건축법 제32조”를 “건축법 제42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행정 구역 안의 건축물의 조경시설, 공동주택 단지의 조경시설, <u>녹지대 및 가로수</u> 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p>	<p>제2조(적용범위) ----- ----- -----<u>녹지대</u> ----- --.</p>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u>가로수</u> 라 함은 도시 녹화경관 조경, 공해방지 및 시민보건향상 등을 위하여 가로, 노변 또는 둔치 등에 조화있게 심은 나무를 말한다.</p>	<p>제3조(용어의 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p>제4조(조경시설의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② (생략)</p>	<p>제4조(조경시설의 관리) ① ----- -----<u>제42조</u>----- -----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책임자를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숲아내기, 가</p>	<p>제5조(행위의 제한) ----- -----<u>제42조</u>----- ----- -----.</p>

지치기 등 나무의 육림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제6조(관리청의 의무) ① 관리청은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이 망가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 기술지도, 묘목알선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1조(가로수등의 관리대장) 관리청은 보호수, 가로수, 조경시설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가로수의 식재·관리

제12조(가로수 식재·관리) ① 관리청은 가로수를 계획적으로 심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가로수 식재방법, 병충해방제 등 가로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시민관리제 실시) ① 관리청은 가로수를 유지·관리함

-----  
-----.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관리청의 의무) ① -----  
-----제42조-----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에 있어 인근 공공기관·학교·  
단체·기업체·상가·주민 등  
이 가로수에 대한 애호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 1. 물주기, 병충해 발생신고,  
방제
- 2. 가로수에 피해가 되는 장애  
물 제거
- 3. 사고·재해 등으로 가로수에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②모든 시민은 가로수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스스  
로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청의  
가로수 유지관리 시책에 가능한  
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가로수 관리의 위탁) 관리  
청은 가로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  
① 관리청이 아닌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가로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

<삭 제>

다.

1. 가로수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우려 있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보호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제16조(손상자 부담금등 징수) ①

관리청은 도로법 제64조 및 제71조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가로수 또는 그 보호시설물을 손상한 자에게는 손상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손상자가 원상복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청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가로수와 그 보호시설물을 이식·이설 또는 제거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상자 부담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7조(녹화지원) 시장은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 꽃 등 조경소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삭 제>

제17조(녹화지원) -----  
-----  
-----  
-----  
-----제42조-----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은 제외한다.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15호

### 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를 “군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친환경상품”이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3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5조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의 심의·자문) 시장은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의 심의·자문) 시장은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을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으로 한다.

제6조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을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으로 한다.

진 시책의 수립)”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7조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를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매년 1월15일까지”를 “수립·공표한 경우 지체없이”로 한다.

제8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법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를 “법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로 한다.

제9조 중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0조 “(친환경상품 구매예외)”를 “(녹색제품 구매예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을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3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3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으로 한다.

제13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제2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5조 “(친환경상품에 관한 정보제공)”을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6조 “(친환경상품 구매문화의 증진사업)”을 “(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8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u>친환경상품</u>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친환경상품”이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정한 상품을 말한다.</li> <li>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u>친환경상품</u>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li> <li>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u>군산시장</u>(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u>친환경상품</u>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li> <li>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u>친환경상품</u>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li> </ol>	<p><u>군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u> 제1조(목적) -- 조례는 「<u>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u>」 제11조----- ----- <u>녹색제품</u>----- ----- -----.</p> <p>제2조(용어의 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녹색제품</u>”이란 「<u>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u>」(이하 “법” ----- -----.</li> <li>2. ----- ----- <u>녹색제품</u>----- -----.</li> <li>3. ----- ----- <u>녹색제품</u>----- -----.</li> <li>4. ----- ----- <u>녹색제품</u>----- -----.</li> </ol>

5. (생 략)

6. “자발적 협약” 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의 심의·자문)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은 「군산시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푸른군산21추진협의회”에서 대행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5. (현행과 같음)

6. -----  
----- 녹색제품 -----  
-----  
-----  
-----.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  
-----  
-----  
-----.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의 심의·자문) ----- 녹색제품 -----  
-----  
-----  
-----  
-----.

1. 녹색제품 -----  
-----
2. 녹색제품 -----  
-----
3. 녹색제품 -----  
-----
4. ----- 녹색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협의회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6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품-- -----  
 녹색제품-- -----  
 -----

5. ---- 녹색제품-- -----  
 -----

6. ----- 녹색제품-- -----  
 -----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6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  
 ----- 녹색제품-- -----  
 ----- 녹색제품-- -----  
 --.

② -----  
 -----.

1. 녹색제품-- -----  
 -----
2. 녹색제품-- -----  
 -----
3. ----- 녹색제품-- -----  
 -----
4. ---- 녹색제품-- -----  
 -----
5. ----- 녹색제품-- -----  
 -----

제7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8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

----- 녹색제품 -----

----- 녹색제품 -----

----- 후 2

개월 이내에 -----

-----.

② -----

-----.

1. 녹색제품 -----

--- 녹색제품 -----

2. 녹색제품 -----

-----

3. -----

----- 녹색제품 -----

-----

-

③ ----- 수립·공표

한 경우 지체없이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

----- 녹색제품 -----

-----.

- 1. (생 략)
- 2.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방법은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9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제10조(친환경상품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및 법 제6조제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의 경

1. (현행과 같음)

2. 녹색제품-----  
-----

3. 녹색제품-----  
-----

4. 녹색제품-----  
-----

② 녹색제품-----  
-----.

③ 법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  
--- 녹색제품-----  
-----.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녹색제품 구매예외) ① -----  
-----  
----- 녹색제품의-----  
-----.

1.·2. (현행과 같음)

② -----  
-----

우에 해당하여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 (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

- 1.·2. (생략)
-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 대상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 ③ ~ ⑤ (생략)
- ⑥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친환경상품 기준으로 인증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

- 녹색제품-----  
-----.

제11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  
-----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 (이하 “판단기  
준” -----  
-----.

- 1.·2. (현행과 같음)
-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  
--

4. (현행과 같음)

② -----  
----- 녹색제품-----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⑥ -----  
----- 녹색제품-----  
-----  
-----.

제12조(교육훈련) ① ----- 녹색제품  
-- -----  
-----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제13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자 또는 보조
2. 친환경상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4조(산학협력사업의 개발) ① 시장은 산업계·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친환경상품에 관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5조(친환경상품에 관한 정보제공)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의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제3장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제13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  
녹색제품-----

-----.

1. 녹색제품-----
2. 녹색제품-----

제14조(산학협력사업의 개발) ① -----  
----- 녹색제품-----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① ----- 녹색제품-----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의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산업계, 소비자단체, 민간단체, 환경단체 등의 관련 단체가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기관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소비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또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사업) ① -----

----- 녹색제품 -----  
----- .

1. ~ 6. (현행과 같음)

② -----  
----- 녹색제품 -----  
----- .

③ -----  
----- 녹색제품 -----  
-----  
-----  
-----  
----- .

제17조(기관평가) ① -----  
----- 녹색제품 -----  
----- .

② ----- 녹색제품 -----  
-----  
-----  
----- .

제18조(포상) ----- 녹색제품 -----  
-----  
-----  
----- .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16호

###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략)</p> <p>2. 배출허용기준 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 허용기준을 말한다.</p> <p>제22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p> <p>① 모든 사람은 야간에 음향기음, 악기음, 사람의 고함소리, 기타의소음으로 소란스럽게 하여서 불쾌감, 안면 방해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p> <p>②시장은 소음진동규제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제2항에 의한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의한 지역으로 한다.</p>	<p>제3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제1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p> <p>&lt;삭제&gt;</p>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17호

###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이하 “법”이라)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5호”를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4호”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경제항만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경제항만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환경관리담당”을 “환경정책계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야생동·식물보호법」”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동물·식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p> <p>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p> <p>3. (생략)</p> <p>4. “농업인”이란 피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람으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 -.</p> <p>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4.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p>
<p>제3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 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p>	<p>제3조(피해농지 면적기준) ----- ----- 관계 없 이-- -----.</p>
<p>제4조(피해보상)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총 피해면적이 165㎡미만인 경우</p> <p>2. ~ 7. (생략)</p>	<p>제4조(피해보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lt;삭제&gt;</p> <p>2. ~ 7. (현행과 같음)</p>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국장, 농정과장, 환경위생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생략)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복지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관리담당이 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야생동물·식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경제항만국장-----  
-----  
-----  
-----.

③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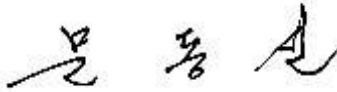
④ -----  
-----  
----- 경우에는 경제항만국장-----.

⑤ -----  
----- 환경정책담당-----  
-----.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18호

### 군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10호”를 “제36조제2항”로 한다.

제2조 중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향토음식점”이란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제1호 중 “법 제89조제2항제2호”를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용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을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용자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명예식품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을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경제항만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를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자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8조 중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육성자금”으로 한다.

제9조 중 “시설개선자금의 용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80 이내로 한다”를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용자한도액 및 육성자금의 용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용자조건 및 용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다.</p> <p>2. (생략)</p> <p>&lt;신설&gt;</p> <p>3. (생략)</p> <p>4.·5.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제36조제2항----- -.</p> <p>2. (현행과 같음)</p> <p>3. “향토음식점”이란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p>
<p>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법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p> <p>2. ~ 4. (생략)</p>	<p>제3조(기금의 조성) ----- -----.</p> <p>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용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p>	<p>제4조(기금의 용도) ----- -----.</p> <p>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p>

2.·3. (생략)

4.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생략)

6.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

7.·8. (생략)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② (생략)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④·⑤ (생략)

제7조(용자대상) 기금의 용자대상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 할 자와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8조(용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보수를 위한 용자사업

2.·3. (현행과 같음)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 (현행과 같음)

6.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7.·8.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경제항만국장-----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7조(용자대상) -----  
-----  
-----  
-----

-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 하며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용자신청) ----- 육성자금-----  
-----  
-----.

제9조(용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용  
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  
요금액의 100분의80 이내로 한다.

제10조(용자대상자 선정 및 용자조  
건 등) (생 략)

<신 설>

<신 설>

제9조(용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업  
종별 용자한도액 및 육성자금의  
용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용자대상자 선정 및 용자조  
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용자조건 및 용자절차 등에 관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  
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  
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  
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  
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  
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19호

###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을 “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 및 지정 폐기물을 제외한”을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3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을 삭제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육지와 연결이 되지 않은 도서지역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6조 제1항 중 “시장은 관할구역 시민에게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토록 계도하여야 한다.”를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토지, 건물내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토지 및 건물 내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의 청결유지 명령에 따라 1개월 범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별표 10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를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관급마대”를 “종량제마대”로 “읍면동에”를 “시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회 5톤 미만의”를 “1회 5톤(m<sup>3</sup>)미만의”로 “마대에”를 “종량제마대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투명하게”를 삭제하고, “얇은 청색”을 “흰색(반투명)”으로, “얇은 연두색”을 “얇은 청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뚜껑은”을 “뚜껑”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같은 조 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로 한다.

제13조의6의 제목 “(관급마대 제작)”을 “(종량제마대 제작)”으로 하고, 제1항 중 “관급마대”를 “종량제마대”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의 “제도업체”를 “제조업체”로, “관급마대”를 “종량제마대”로 한다.

제13조의7의 제목 “(관급마대의 공급 및 판매)”를 “(종량제마대의 공급 및 판매)”로 하고, 같은 조 중 “마대”를 “종량제마대”로 한다.

제14조 제3항 중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 및 무단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본청·사업소 및 읍면동이 참여하는 일제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공공용봉투(또는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의 3의 제1항 중 “제14조의1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로,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판매자는 모조 또는 불법제작한 종량제봉투 등을 진열, 판매 하여서는 안되며, 종량제봉투 등의 불법유통을 발견 시 이를 즉시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14조의 4의 제3호 중 “제25조2의 규정에 의거”를 삭제한다.

제20조 제1항 중 “관급마대”를 “종량제마대”로 한다.

제2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육지와 격리된 도서 및 제3조2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중 일정기간 쓰레기 운반처리가 곤란한 지역에 한하여 적환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 제1항 중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14조제5항”로 한다.

제25조 제1항 중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로 한다.

제27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9조 제2항 중 “매월 80리터 범위 내”를 “매월 60리터 범위 내”로 한다.

제35조 중 “참작하되 별표 10의 과태료”를 “참작하여 영 별표 8 과태료의”로 한다.

제50조 제1호의 “하천정비시 수거한 폐기물”를 “하천하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수거한 폐기물”로 한다.

“별표 1, 별표 4, 별표 4-3, 별표 6, 별표9, 별표 10,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 ----- 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 및 지정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6. ----- -----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 -----.
7. ~ 13. (생략)	7. ~ 13. (현행과 같음)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 ----- -----

“시행규칙”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생략)

<신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시민에게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토록 계도하여야 한다.

②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토지, 건물내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삭제)  
-----  
-----  
-----  
-----

제5조(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육지와 연결이 되지 않은 도서지역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토지 및 건물 내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의 청결유지 명령에 따라 1개월 범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청결유지의 이행) ① (생략)

②시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표 10의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생략)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략)

②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서 폐기물 종류에 따라 납부필증을 구입한 후, 부착하여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납부필증 부착이 어려운 대형폐기물은 관급마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따로 묶어서 읍면동에 신고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깨진유리, 집수리잔재물 등 일련의 공사(착공에서 완료시까지)로 인한 1회 5톤 미만의 폐기물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 폐기물은 마대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수수료는 별표 9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⑥ (생략)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

제7조(청결유지의 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종량제마대에 -----  
----- 시장에게 -----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회 5톤(m³)미만의 -----  
----- 종량제마대에 -----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 제8조 -----  
-----

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기록된 안내전단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 ⑨ (생략)

제11조(종량제 봉투 종류 및 재질)

① (생략)

②종량제봉투의 재질은 시장이 선정하되 생분해성 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재질로 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연두색으로 한다.

③종량제봉투의 크기, 용량 및 뚜껑은 별표 3과 같다.

④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3조의6(관급마대 제작) ①관급마대(이하 “마대” 라 한다.)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생략)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

-----  
-----  
-----  
-----.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1조(종량제 봉투 종류 및 재질)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삭 제) -----  
----- 흰색(반투명), -----  
----- 엷은 청색-----  
-.

③ ----- 뚜껑 -----  
-----.

④ -----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 규격 준수 여부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6(종량제마대 제작) ①종량제마대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제조업체 -----

료 후 민간 제도업체로부터 인쇄원  
관을

회수·보관하는 등 관급마대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7(관급마대의 공급 및 판  
매) 시장은 마대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급업무를 위탁 및 대행토  
록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3(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4  
조의1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  
라 한다)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신설>

----- 종량  
제마대의 -----

-----.

제13조의7(종량제마대의 공급 및 판매)  
----- 종량제마대 -----

-----  
-----  
-----.

제14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 및 무단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이 참여하는 일제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시장은 공공용봉투(또  
는 폐현수막 재활용마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3(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4  
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

-----  
-----  
-----.

1. ~ 3. (현행과 같음)

4. 판매자는 모조 또는 불법제작한  
종량제봉투 등을 진열, 판매 하여서는  
안되며, 종량제봉투 등의 불법유통을

제14조의4(판매소의 지정취소)

1. ~ 2. (생략)

3. 제25조2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하였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

4. (생략)

제20조(대형폐기물배출신고) ①납부  
필증 부착이 어려운 대형폐기물은  
관급마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따로  
묶어서 신고 후 시장이 정하는 방  
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3조(쓰레기적환장설치)

① ~ ③ (생략)

④ <신설>

제24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 5. (생략)

발견 시 이를 즉시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14조의4(판매소의 지정취소)

1. ~ 2. (현행과 같음)

3. (삭제) -----  
-----  
-----

4. (현행과 같음)

제20조(대형폐기물배출신고) ①-----  
----- 종량  
제마대-----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쓰레기적환장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육지와 격리된 도서 및 제  
3조2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중 일정기간 쓰레기 운반  
처리가 곤란한 지역에 한하여 적환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5항-----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2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27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생략)

②읍면동에 신고하는 대형폐기물의 납부필증 수수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배출신고 접수대장에접수하고 별표1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한 후 그 영수증을읍면동에 제출하여 납부필증을 공급 받는다. 발부받아 그날부터 15일이내에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이 조례에 규정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④제4조의 적용대상으로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넣기 곤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별표 9와 같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 쓰레기종량  
제봉투 판매소-----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삭제 >

③의 내용을 ②의 내용으로 한다.

④의 내용을 ③의 내용으로 한다.

다.

제29조(수수료의 감면) ① (생 략)

1. ~ 2. (생 략)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8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 10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50조(수수료의 감면) (생 략)

1. 하천정비시 수거한 폐기물

2. ~ 3. (생 략)

제29조(수수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②-----  
----- 매월 60 리터 범위 내 -----.

제3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 참작하여 영 별표 8 과태료의 -----  
-----.

50조(수수료의 감면) (현행과 같음)

1. 하천하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수거한 폐기물

2. ~ 3. (현행과 같음)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제3항 관련)

품 명	규 격	가 격 (원)
냉 장 고	500L 이상	9,000
	300L 이상	6,000
	300L 미만	4,000
텔 레 비 전	42인치 이상	5,000
	12인치 이상	3,000
세 탁 기	모든 규격	4,000
에 어 콘	264m <sup>2</sup> 형 이상	9,000
	66m <sup>2</sup> 형 이상	5,000
	66m <sup>2</sup> 형 미만	3,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2,000
탈 수 기	모든 규격	2,000
공기 청정기	높이 1M 이상	2,000
장 농	120cm 장 1쪽	16,000
	90cm 장 1쪽	11,000
소 파	대형 6인용 이하	9,000
	소형 4인용 미만	5,000
	소형 1인용	2,000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제3항 관련)

품 명	규 격	가 격 (원)
가습기	모든 규격	무 상
개인용컴퓨터	모든 규격	무 상
공기청정기	모든 규격	무 상
냉장고	모든 규격	무 상
믹서	모든 규격	무 상
복사기	모든 규격	무 상
비디오 플레이어	모든 규격	무 상
선풍기	모든 규격	무 상
세탁기	모든 규격	무 상
식기건조기	모든 규격	무 상
에어컨디셔너	모든 규격	무 상
연수기	모든 규격	무 상
오디오	모든 규격	무 상
음식물처리기	모든 규격	무 상
이동전화단말기	모든 규격	무 상
자동판매기	모든 규격	무 상
전기다리미	모든 규격	무 상
가스전기레인지	모든 규격	무 상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제3항 관련)

품 명	규 격	가 격 (원)
책 상	양수, 대형	5,000
	편수, 소형	4,000
식 탁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피 아 노	어프라이트	11,000
	그 랜 드	16,000
서 랫 장	5 단 이 상	4,000
	4 단 이 하	2,000
신 발 장	모든 규격	2,000
문 갑	모든 규격	2,000
화 장 대	모든 규격	3,000
장 식 대	모든 규격	4,000
침 대	1 인 용	11,000
	2 인 용	16,000
메 트 리 스	1 인 용	5,000
	2 인 용	9,000
캐 비 넷	대 형	6,000
	소 형	4,000
보 일 러 통	대 형	9,000
	중 형	5,000
	소 형	2,000
온 풍 기	대 형	11,000
	소 형	9,000
팬 히 타	모든 규격	4,000
난 로	대 형	5,000
	소 형	3,000
진 열 장	대 형	5,000
	소 형	3,000
의 자	대 형	3,000
	중 형	2,000
	소 형	1,000
싱 크 대	대 형	4,000
	소 형	2,000
찬 장	모든 규격	3,000
오 락 기 기	대 형	6,000
	소 형	3,000
수 족 관	대 형	11,000
	소 형	4,000
장 판	1묶음(20kg)	2,000
카 페 트	1묶음(20kg)초과	4,000
	1묶음(20kg)미만	3,000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제3항 관련)

품 명	규 격	가 격 (원)
전기밥솥	모든 규격	무 상
전기비데	모든 규격	무 상
가스·전기 오븐	모든 규격	무 상
전기 정수기	모든 규격	무 상
전기히터(팬히터)	모든 규격	무 상
청소기	모든 규격	무 상
탈수기	모든 규격	무 상
텔레비전	모든 규격	무 상
팩시밀리	모든 규격	무 상
프린터	모든 규격	무 상
기타 가전제품	모든 규격	무 상
금 고	대 형	16,000
	소 형	11,000
난 로	대 형	5,000
	소 형	3,000
마 네 킹	개 당	3,000
매트리스	1 인 용	5,000
	2인용 이상	9,000
문 갑	모든 규격	2,000
벽 시 계	대 형	4,000
	소 형	2,000
변 기	개 당	3,000
보 일 러 통	대 형	9,000
	중 형	5,000
	소 형	2,000
보 행 기	개 당	2,000
서 랫 장	5 단 이 상	4,000
	4 단 이 하	2,000
세 면 기	개 당	3,000
소 파	대형 5~6인용	9,000
	소형 3~4인용	5,000
	1인용(개당)	2,000
수 족 관	대 형	11,000
	소 형	4,000
식 탁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제3항 관련)

품 명	규 격	가 격 (원)
변 기	개 당	3,000
욕 조	개 당	4,000
칸막이 판넬	개 당	2,000
마 네 킹	개 당	3,000
의류(이불등)	마 대 당	2,000
자 판 기	대 당	9,000
금 고	대 형	16,000
	소 형	11,000
컴퓨터 일체	세 트	4,000
복 사 기	대 형	9,000
	일 반	4,000
식기 건조기	모든 규격	2,000
전축(오디오셀)	대 형	16,000
	중 형	11,000
	소 형	4,000
비 디 오	모든 규격	2,000
진공 청소기	개 당	2,000
밥 통	개 당	2,000
선 풍 기	개 당	2,000
재 봉 틀	개 당	2,000
유 모 차	개 당	2,000
보 행 기	개 당	2,000
벽 시 계	대 형	4,000
	소 형	2,000

\* 상기의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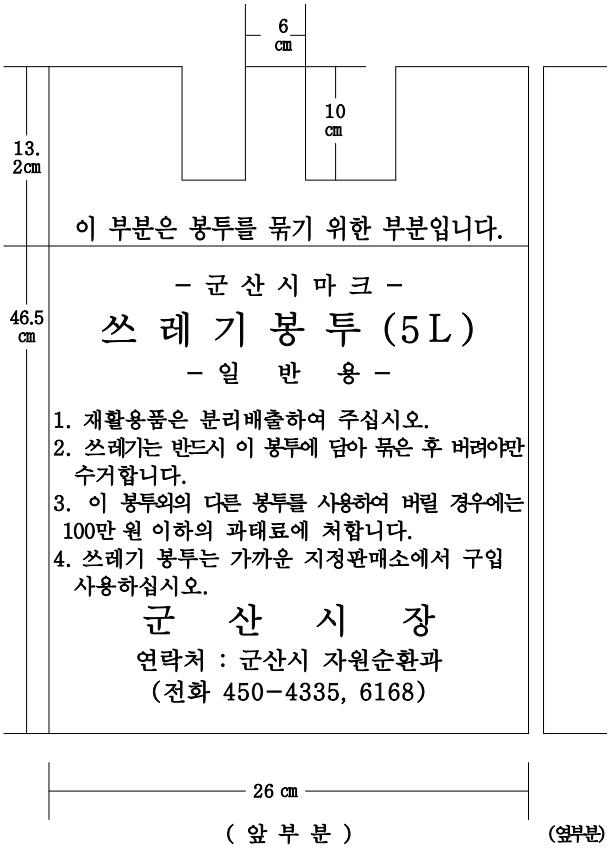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제3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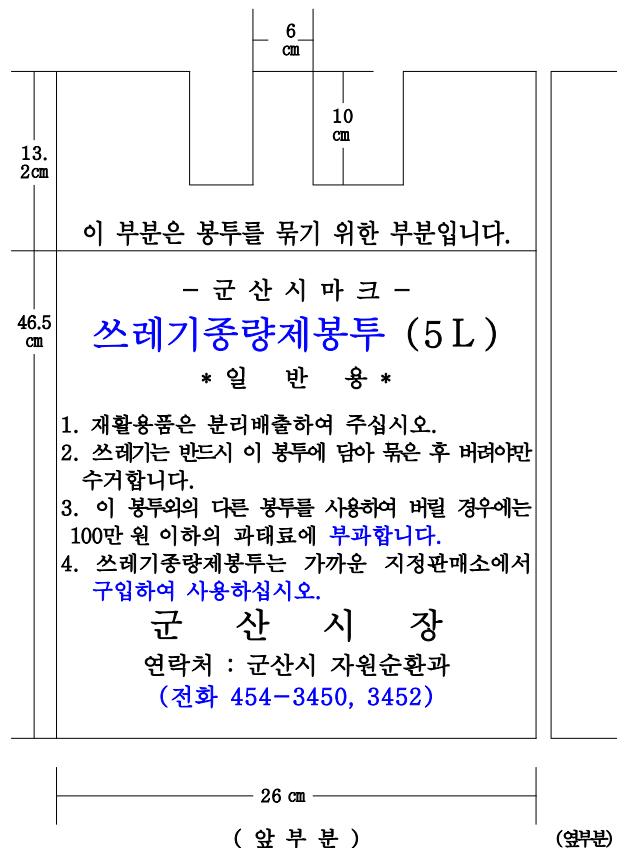
품 명	규 격	가 격 (원)
신 발 장	모든 규격	2,000
싱 크 대	대 형	4,000
	소 형	2,000
오 락 기 기	대 형	6,000
	소 형	3,000
온 풍 기	대 형	11,000
	소 형	9,000
욕 조	개 당	4,000
유 모 차	개 당	2,000
의류(이불등)	마 대 당	2,000
의 자	대 형	3,000
	중 형	2,000
	소 형	1,000
장 룡	120cm 장1쪽	16,000
	90cm 장1쪽	11,000
장 식 대	모든 규격	4,000
장 판	1묶음(20kg)	2,000
재 봉 틀	개 당	2,000
진 열 장	대 형	5,000
	소 형	3,000
찬 장	모든 규격	3,000
책 상	양수, 대형	5,000
	편수, 소형	4,000
침 대	1 인 용	11,000
	2인용 이상	16,000
카 페 트	1묶음(20kg) 초과	4,000
	1묶음(20kg) 미만	3,000
캐 비 닷	대 형	6,000
	소 형	4,000
칸막이 판넬	개 당	2,000
피 아 노	어프라이트	11,000
	그 랜 드	16,000
화 장 대	모든 규격	3,000

\* 상기의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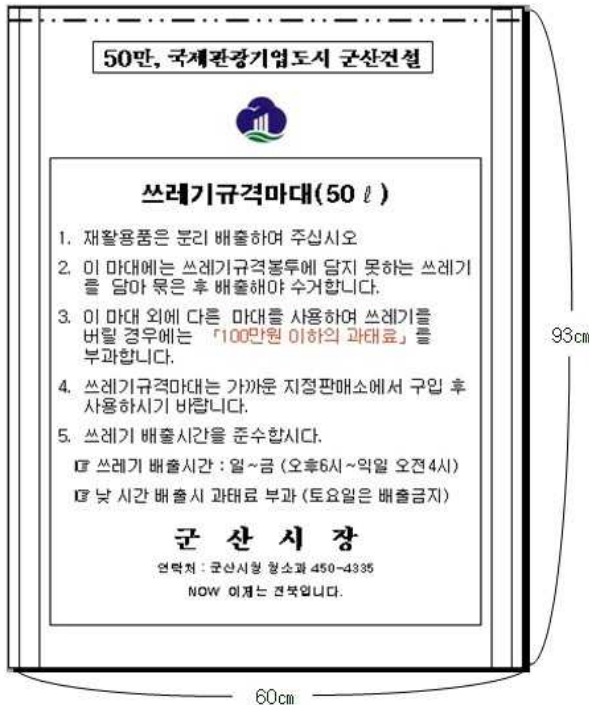
[별표 4] 쓰레기 봉투의 형식(제13조제5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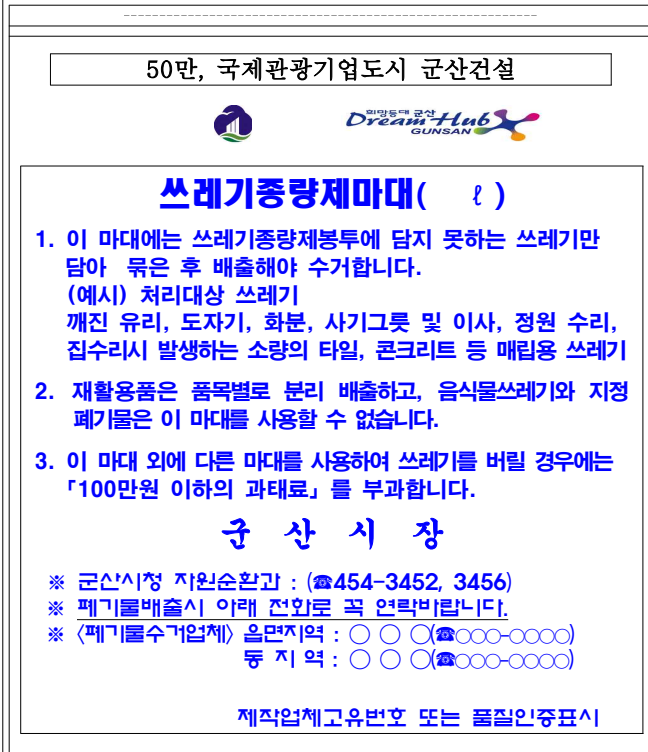
[별표 4] **종량제** 봉투의 형식(제13조제5항 관련)



[별표 4-2] **관급마대**의 형식(제13조의5제2항관련)



[별표 4-2] **종량제마대**의 형식(제13조의5제2항관련)



[별표 4-3]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형식(제13조의3제2항관련)



[별표 4-3]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형식(제13조의3제2항관련)



종류	지질	규격
1천원,2천원,3천원,5천원,1만원	초특강스티커	12.5*10cm

[별표 6] 설치대상 및 기준 (제21조2항 관련)

☐ 재활용품 보관 창고

구분	기준	설치규모	조적조스라브 또는 와즙	비고
공동주택	100~300세대 미만	20㎡	"	
	300~500세대 미만	50㎡	"	
	500세대 이상	60㎡	"	
기타건물	1천㎡이상~3천㎡ 미만	6.6㎡	"	
	3천㎡ 이상	9.9㎡	"	

☐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

구분	기준	설치규모	재질	비고
공동주택	50세대미만	재활용함(4종이상) 1조	스틸 스테인레스 PE합성수지 폴리에스탈	건물용도에 따라 추가확보 조치가능
	50세대 초과시마다	1조씩 추가확보	"	"
기타건물	1천㎡이상~2천㎡미만	재활용함(4종이상) 2조이상	"	"
	2천㎡이상~3천㎡미만	재활용함(4종이상) 3조이상	"	"

[별표 6] 설치대상 및 기준 (제21조2항 관련)

☐ 재활용품 보관 창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6] 설치대상 및 기준 (제21조2항 관련)

□ 쓰레기 수거박스

구분	기준	설치규모	재질	비고
공동주택	100세대이상~ 500세대 미만	쓰레기 수거 C/T 박스 1개	스틸	건물용도에 따라 추가확보 조치가 가능
	500세대 이상	쓰레기 수거 C/T 박스 2개	“	“
기타 건물	3천㎡이상~ 66천㎡ 미만	쓰레기 수거 C/T 박스 1개	“	“
	66천㎡이상	쓰레기 수거 C/T 박스 2개	“	“

□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신규)

[별표 9] 일반용봉투에 넣기 곤란한 다량의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제8조제5항)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단위
22,400원	12,720원	9680원	1톤당
구분		수수료	단위
관급마대(50L)를 사용배출한 쓰레기의 경우		2,240원	1개당

[별표 10] 과태료 부과 기준(제35조)

1. 일반기준

- 가. 일반행위가 2인이상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치수를 적용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받은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다. 개별기준에 정하여지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규정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표 6] 설치대상 및 기준 (제21조2항 관련)

(현행과 같음)

□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분	기준	설치규모	재질	비고
공동 주택	20세대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 용기 (120리터)	PE합성수지 폴리에스탈	
	20세대 초과 시	1개씩 추가확보	PE합성수지 폴리에스탈	

[별표 9] 종량제봉투에 넣기 곤란한 다량의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제8조제5항)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단위
22,400원	12,720원	9680원	1톤 또는 1㎡
구분		수수료	단위
쓰레기종량제마대 사용 배출	20L	900원	1개당
	50L	2,240원	

[별표 10] 과태료 부과 기준(제35조)

< 삭제 >

[별표 10] 과 태 료 부 과 기 준(제35조)

[별표 10] 과 태 료 부 과 기 준(제35조)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후)
폐기물 관리법	1. 폐기물의 수집장소, 설비 또는 허가·승인 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8조)			
	① 사업이나 생활관계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의 곳에 폐기물을 투한 경우			
	가. 별도 구획이 확보된 폐기물(담배꽂이,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50	50	50
	나. 간이보관기(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소각하는 경우	100	200	200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200	200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300	400	500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의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제외)	500	700	1,000
	②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 이외의 장소에 매립한 경우	500	700	1,000
	③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	700	1,000
	2.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가. 생활폐기물의 배출시에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0	50	50
	나.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10	20	30
	3.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5조)	300	500	1,000
	4. 생활폐기물처리업자중 시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자(법 제14조제3항)	500	700	1,000
	5.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자(법 제13조 관련)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나.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경우	2,000	3,000	5,000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감염성 폐기물 제외)	2,000	4,000	6,000	

< 삭 제 >

[별표 11] 과태료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57조 제2항 관련)

행 위	과태료	포상금상한
○ <u>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u>	50	- <삭제2007.01.02>
○ <u>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u>	100	80
○ <u>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u>	100	80
○ <u>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u>	300	240
○ <u>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u>	500	400
○ <u>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 이외의 장소에 매립한 경우</u>	500	400
○ <u>생활폐기물의 배출시에 지정된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u>	50	40
○ <u>음식물 쓰레기를 자치단체의장이 정한 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u>	50	40
○ <u>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할 수 없는 생활쓰레기를 혼합배출하는 경우</u>	50	40
○ <u>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보관,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u>	500	400

[별표 11] 과태료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57조 제2항 관련)

행 위	과태료 (천원)	포상금상한 (천원)
○ <u>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u>	50	- <삭제2007.01.02>
○ <u>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u>	200	160
○ <u>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버린 경우</u>	200	160
○ <u>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u>	500	400
○ <u>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u>	1,000	800
○ <u>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u>	1,000	800
○ <u>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u>	500	400
○ <u>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u>	1,000	800
○ <u>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u>	500	400

※ 위 지급기준에 의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20호

##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한다)이란 영 제8조의4에서 정한 사업장[다만 시행령 제8조의4 규정에 의한 휴게 및 일

반음식점 영업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휴게음식점 영업과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영업은 제외한다)]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영업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사업장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납부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플라스틱 칩(Chip)을 말한다.

8. “납부칩 보관함”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납부칩을 보관하는 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고, 배출품목과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 및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지역은 분리배출지역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음식재료 또는 음식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5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 책무) ①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제7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1조에 따른다.

④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

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또는 부피에 따라 납부 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기타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납부칩 판매 가격 및 단위 무게당 수수료는 1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1조(수수료 납부칩의 색상·규격·제작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칩은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칩을 제작함에 있어 납부칩에 시의 기관명, 직인, 심벌마크, 용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납부칩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납부칩과 납부칩 보관함의 제작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납부칩의 구입·판매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납부칩 판매소로부터 납부칩을 구입하여 배출시 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납부칩의 판매는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판매업자가 대행할 수 있다.

③ 납부칩 판매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납부칩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납부칩 판매인은 납부칩을 판매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납부칩 확보
2. 모조 또는 불법 납부칩의 진열 및 판매금지
3. 납부칩 판매대금의 기간 내 납부
4. 규정요금 준수
5. 기타 행정지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사항을 수시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납부칩 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는 별표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

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와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다.

③시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공급) ①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전용수거용기를 다량배출사업장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세대 및 업소당 1회에 한하여 공급하고 타시군에서 전입한 세대도 1회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제작·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 계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한다.

1.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지급 및 정산방법
2. 영업상의 준수사항 및 계약 등 변경해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을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

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20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

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20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2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23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

은 제15조,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2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를 아래와 같이 한다.

< 별표 1 >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쓰레기</li> <li>-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물질(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li> <li>-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li> <li>-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li> </ul>

< 별표 2 >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행정처분 기준

(제13조와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  
서 산입한다.

2. 위반항목별 처분기준

위 반 항 목	조 치 기 준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미비치	시정조치	시정조치	취소	
2. 모조 또는 불법유출 납부필증 진열 및 판매	취소			고발
3. 납부필증 판매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시정조치	시정조치	취소	
4. 기타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시정조치	시정조치	취소	

※ 비고 : 제2호의 행위시 즉시 지정취소하고 형법 제229조에 의거 고발을 병행할 수 있다.

< 별표 3 >

## 과태료 부과기준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  
서 산입한다.

###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의2)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별지 제1호 서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식점: 객석·객실 합계 면적	m <sup>2</sup>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m <sup>2</sup>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m <sup>2</sup>
	[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⑨ 자가처리계획	⑩ 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kg/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kg/일)	부산물 발생량 (kg/일)	처리방법	처리자

⑫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⑬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kg/일)	위탁계약 비용 (원/kg)	위탁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 변경사유	
--------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 [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장 귀하

(뒤쪽)

<p>첨부서류</p>	<p>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 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p>	<p>수수료 없음</p>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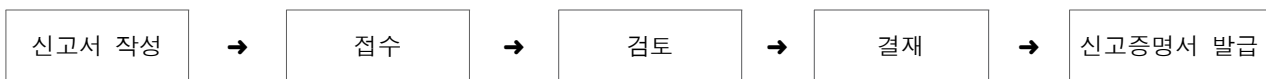
**작성방법**

-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p>집단급식소</p>	<p>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 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p>
<p>음식점 호텔·콘도 등</p>	<p>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p>
<p>대규모점포</p>	<p>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p>
<p>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유통센터)</p>	<p>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p>
<p>공통</p>	<p>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p>

-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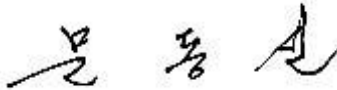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21호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난감도서관은 보유하고 있는 장난감의 내구연한을 관리하여야 하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난감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훼손, 멸실의 경우 회원이 손해를 변상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의열시민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2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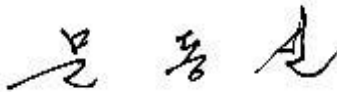
군산시 의열시민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군산시 의열시민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23호

###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을 관련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 당해연도 급여체계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p> <p>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lt;신설&gt;</p> <p>③ · ④ (생략)</p>	<p>제4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u>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을 관련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 당해연도 급여체계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여성상담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24호

군산시 여성상담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

군산시 여성상담소 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25호

###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투자기관·출연기관”을 “출자기관·출연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정보”란”을 ““정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행정정보는”을 “정보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로, “공개하여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로 한다.

제4조 중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공개대상 정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정보의”를 “정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집행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의3(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은 기록관리 담당 부서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5.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을 “집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목적, 정보”를 “정보”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행정정보공표제도”를 “정보공표제도”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를 “(정보의 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을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집행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의하여 전자우편이나”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사항”을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군산시_행정정보공개_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집행기관”이란 시청(시 소속 행정기관 포함) 및 시 조례에 의한 <u>투자기관·출연기관</u>을 말한다.</p> <p>2. “청구인”이란 <u>행정정보</u>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p> <p>3. “<u>행정정보</u>”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p> <p>4. (생략)</p> <p>제3조(정보공개의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u>행정정보</u>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u>공개하여야</u> 한다.</p> <p>제4조(시의 책무) 시장은 행정정보를 시민이 신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u>공개대</u></p>	<p style="text-align: center;"><u>군산시_정보공개_조례</u></p> <p>제2조(정의) ----- -----</p> <p>1.----- ----- --<u>출자기관·출연기관</u>----- -.</p> <p>2.-----<u>정보</u>----- ----- -----.</p> <p>3. “<u>정보</u>”란----- ----- ----- ----- ----- -----.</p> <p>4. (현행과 같음)</p> <p>제3조(정보공개의원칙) ----- -----<u>정보는 시민</u> <u>의 알권리 보장</u> 등을 위하여--- ----<u>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u>---.</p> <p>제4조(시의 책무) ----- ----- -----<u>공개대상 정보</u>-----</p>

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표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  
-----.

제5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  
-----  
-----  
정보의-----  
-----  
-----.

②-----  
-----  
-----정보-----  
-----  
-----.

제5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 공개) 집행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의3(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은 기록관리 담당 부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생략)
2. 공개를 청구하는 목적,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생략)

제2장 행정정보공표제도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

서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5.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

-----  
-----  
-----집행기관  
-----  
-----  
-----  
-----

1. (현행과 같음)
2. -----정보-----  
-----

② (현행과 같음)

제2장 정보공표제도

제7조(정보의 공표) ① -----

-----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

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계획
2. 부채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
3.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교통량 및 도시계획 관련 통계 등)
5. (생략)

②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정보-----  
-----.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5. (현행과 같음)

②집행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시에서 실시하는 민원인 만족도 평가와 설문조사 결과
3.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중간보고서 및 최종결과물
4.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5.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 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집행 현황
7.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구매·용역발주 계약사항
8. 제7호의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9. 행정심판재결 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0.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11. 각종 시정과 관련하여 시가 주최한 공청회개최 결과보고

서

12.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③ (생략)

제8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신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공개방법) ① 정보-----  
-----  
-----  
-----  
-따라-----  
-----  
-----.

② 정보-----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심의회의 기능) -----  
-----

1. (현행과 같음)
2. -----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

<p>&lt;신 설&gt;</p>	<p><u>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u></p>
<p>&lt;신 설&gt;</p>	<p>나. <u>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u></p>
<p>&lt;신 설&gt;</p>	<p>다. <u>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u></p>
<p>&lt;신 설&gt; 3. (생략)</p>	<p>라. <u>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u> 3. (현행과 같음)</p>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26호

###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①~③항을 전부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7조(기금관리) ① 예술단의 육성</u>  <u>성을 위하여 특별히 교부한 보조금, 기탁금, 성금, 공연 수익</u>  <u>금은 예술단 진흥기금으로 별도</u>  <u>관리한다.</u></p> <p><u>② 예술단 진흥기금은 이율이 가장</u>  <u>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별도</u>  <u>위탁 관리하여야 한다.</u></p> <p><u>③ 예술단 진흥기금의 수입은 당</u>  <u>해 예술단 진흥을 위하여 지원</u>  <u>할 수 있다.</u></p>	<p><u>&lt;삭 제&gt;</u></p>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27호

###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문화재의 발굴 및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설의 관리 책임) ① ~ ③ (생 략) <신 설>	제5조(시설의 관리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장은 문화재의 발굴 및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u>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28호

군산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재을”을 “문화재를”로 한다.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문화재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책자 및 다양한 기록물로 출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29호

###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체에게”를 “주체에게 1회에 한하여”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을 “주민복지국장, 총무과장, 어린이행복과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지원대상) 시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행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1. · 2. (생 략)</p> <p>3. 「<u>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u>」 제6조의 규정에 의한 <u>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 사업</u></p> <p>4. 「<u>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u>」 제4조의 규정에 의한 <u>지원대상 사업</u></p> <p>5. <u>참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u></p> <p>6. · 7. (생 략)</p>	<p>제9조(지원대상)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6. · 7. (현행과 같음)</p>
<p>제14조(예산의 반영 및 지원) ① (생 략)</p> <p>②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마을 만들기 <u>주체에게</u>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p> <p>1. ~ 5. (생 략)</p>	<p>제14조(예산의 반영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주체에게 1회에 한하여</u>----- ----- -----.</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21조(구성 등) ① · ② (생 략)</p>	<p>제21조(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  
다.

1.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기  
획예산과장, 산림녹지과장,  
관광진흥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농촌지원과장 등

2. ~ 4. (생략)

④ (생략)

③-----  
-----.

1. 주민복지국장, 총무과장,  
어린이행복과장-----

2.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3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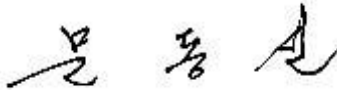
군산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

군산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31호

###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호~ 3호를” 삭제하고 “군산시간여행축제”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1호~4호”를 현행과 같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호. 단, 군산시의 예산을 연간 500만원이상 지원받는 개인이나 단체의 회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대표축제 육성 및 지원)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대표축제라함은 전북도에서 시·군대표 축제로 선정된 축제를 말한다
- ② 군산시 대표축제는 제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는 축제관련 전문가 및 축제발전에 적합한자 중에서 2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축제를 지속적으로 육성시킬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축제 종합계획의 수립
  2. 대표축제 프로그램 발굴·육성
  3. 축제의 주관과 행사진행 지원
  4. 그 밖의 축제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
- ⑤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서기, 위원의 해촉, 수당 등은 조례 제5조~9조, 제14조를 따른다.

- ⑥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⑦ 군산시 대표축제의 분야별 유공자 및 수상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산시 축제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군산시 축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군산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축제, 축전, 문화제, 예술제, 가요제, 제(祭)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1. <u>군산새만금축제</u>	1. <u>군산시간여행축제</u>
2. <u>벚꽃예술제</u>	<삭 제>
3. <u>군산수산물축제</u>	<삭 제>
4. (생략)	2. (현행 제4호와 같음)
5. ~ 7. (생략)	3. ~ 5.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4조(구성) ①·② (생략)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제4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단, 군산시의 예산을 연간 500만원이상 지원받는 개인이나 단체의 회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대표축제 육성 및 지원)

① 대표축제라 함은 전북도에서 시·군대표 축제로 선정된 축제를 말한다.

② 군산시 대표축제는 제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는 축제관련 전문가 및 축제발전에 적합한 자 중에서 2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축제를 지속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대표축제 종합계획의 수립
- 2. 대표축제 프로그램 발굴·육

제11조 ~ 제15조 (생략)

성

3. 축제의 주관과 행사진행 지원

4. 그 밖의 축제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서기, 위원의 해촉, 수당 등은 조례 제5조 ~9조, 제14조를 따른다.

⑥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⑦ 군산시 대표축제의 분야별 유공자 및 수상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할 수 있다.

제12조 ~ 제16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32호

군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로 한다.

제10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규정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의 규정에”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를 제외한 총공사비 3억 원 이상인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 리모델링 공사 등은 제외한다.</p>	<p>제2조(적용)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 ----- . ----- -----.</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해당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p> <p>4.·5. (생략)</p>	<p>제3조(정의) ----- ----- . 1.·2. (현행과 같음) 3.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 ----- ----- ----- ----- ----- . 4.·5. (현행과 같음)</p>
<p>제10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① (생략)</p>	<p>제10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① (현행과 같음)</p>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규정에 따라 부실별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의 규정-----  
 -----.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33호

군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군산시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군산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당해 자문·심의안건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서 당해 자문·심의 안건의 분야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당해 자문·심의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소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공사 관련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2. 공사 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이상 임직원
3.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4.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7.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8. 중앙위원회, 타 지자체의 지방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인 자
9. 기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단, “전문가”라 함은 위 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임기)** 군산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자문·심의안건별 위원회를 구성한 때로부터 자문·심의 종결 때까지로 한다. 단, 자문·심의 안건이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때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자문·심의 대상 및 범위)** ①위원회의 자문·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9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2. 다른 법령에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으로 하는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2. 설계 감리를 한 공사
3. 중앙 또는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공사

**제6조(자문·심의 요청)**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문·심의안건이 있는 부서의 장은 용역수행단계에서 1회이상 위원회에 자문·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심의를 받을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문·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설계자문·심의요청서와 당해 안건의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대항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제9조(사전검토)** ①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분야별로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하“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기술검토를 위뢰할 수 있다.

②기술검토를 요청 받은 위원 등은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소집)**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안설명)** 자문·심의를 요청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심의를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책임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문·심의의결)** 자문·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 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재심의”라 함은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13조(결과처리)** ①자문·심의가 끝나면 위원장은 자문·심의를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자문·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등)** ①기술자문위원회는 영 제19조제4항제1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분과위원회 위원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분과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절차·방법 등을 준용한다.

**제15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자문·심의를 요청한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을 날인한 회의록과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서류, 기타 자문·심의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6조(위원 등의 의무)** 위원 등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

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중 알게된 정보 및 기밀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수당 등) 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타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는 본 개정조례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본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용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34호

군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용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

군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용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서흥남동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35호

군산시 서흥남동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

군산시 서흥남동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36호

군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자동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견인 대상지역은 주차금지구역 전구간으로 한다. 다만 주택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차량 중 주차단속 공무원이 견인요청한 차량은 견인할 수 있다.

제3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이 업무대행시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 산정기준은 별표

와 같다.

② 시장은 피견인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사용자 등”이라 한다)가 차량의 반환을 요구한 때는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견인 소요비용 납부고지서를 사용하여 제1항에서 정한 견인 소요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대행법인 등이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소요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주차위반차량의 견인시 조치사항) 주차위반 차량 등을 견인할 때에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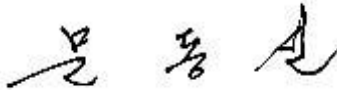
1.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단속 공무원이 견인토록 지시한 차량 및 견인지역에 불법주차 되어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 중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며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견인조치 한다.
2.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표지를 그 차의 사용자 등이 볼 수 있고,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3.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이하“피견인차”라 한다)은 이동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나타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주차위반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 후 견인료를 징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 견인업무 종사자는 견인전 차량의 내외부 확인과 사진촬영 등 차량상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견인장착·이동 및 보관 중 차량 내외부의 손상이나 적재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37호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서 “별표 1의 기준” 내용에서 부분삭제(별표 1 참조)

제5조제2항 중 “음용수 수질검사, 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을 “위생분야종사자 진단서 건강진단”으로 한다.

“별표 2의 기준” 내용에서 부분삭제(별표 2 참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지소장·진료원”을 “보건지소장·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건강진단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한 별도의 검사 및 응용수 수질검사, 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서는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적용 · 징수한다.</p>	<p>제5조(건강진단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위생분야</u> <u>종사자진단서 건강진단</u>----- ----- -----.</p>
<p>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 · 진료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또는 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u>보건지소장 · 보건</u> <u>진료소장</u>----- ----- -----.</p>
<p>1. ~ 5. (생략)</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보수 등) 보건진료원 및 업무보조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보수 등) <u>보건진료소장</u>----- ----- ----- -----.</p>

【별표 1】 <개정2002.11.30>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제5조1항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 고
1. 건강진단서	1통	500	
2. 채용신체검사서	1통	500	
3. 일반진단서	1통	500	
4. 특별진단서	1통	2,000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5. 사체검안서	1통	5,000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2,000	삭제
7. 사망진단서	1통	500	
8. 출생, 사산 또는 사태	1통	500	삭제
9. 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통	300	
10. 1통 초과시	1통	100	
11. 운전면허 적성검사	1통	500	
12. 음용수 수질검사	1통	500	삭제
13. 사회복지시설입소자진단서	1통	500	

※ 제증명발급을 위한 별도의 검사 및 음용수 수질검사,(삭제) 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서는 【별표2】 의 기준에 의거 적용·징수한다.

【별표 2】 <개정2002.11.30>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검 사 항 목	검사구분	수가산정기준	비 고
가. 건강진단서	·혈압체크, 기왕력 등, ·흉부 엑스선촬영, ·간염항원 항체검사, ·혈청매독검사 등	·기본진찰 ·방사선진단 ·임상검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산정기준 적용	
나. 채용신체검사서	·체격, 혈압, 시력 등 ·흉부 엑스선촬영 ·간염항원 항체검사 ·혈청매독검사 ·노검사 ·빈 혈, 간기능검사 ·혈액형검사 등	·기본진찰 ·방사선진단 ·임상검사		
다. 운전면허적성검사 일반 진단서	·관계법령에 의함	·기본진찰		
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진단서	·혈압체크, 기왕력 등 ·노검사, 간기능검사 간염항원 항체검사, 흉부엑스선촬영(간찰) 혈청매독검사 등	·기본진찰 ·방사선진단 ·임상검사		
마. 음용수 수질검사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 질소, 색도 맛, 탁도, 냄새 일반세균, 대장균 등	·기본 임상검사	·국립환경연구원 시험 의뢰 규칙 제7조 관련 [별표] 적용	삭제
바.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흉부 엑스선촬영(간찰) ·장내세균, 간염검사, 피부질환, 성병검사등	·기본진찰 ·방사선진단 ·임상검사	·위생분야종사자 등 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 적용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38호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역할 및 기능을 겸한다.

제9조제3항제7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시민건강생활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제10조제3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다음과 같이 제1호를 신설한다.

1. 건강도시 관련 분야의 공무원, 교수 및 전문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략)</p> <p>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li> <li>2.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3.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li> <li>4.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li> <li>5. 건강도시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li> <li>6. 사업추진 기관·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li> <li>7.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lt;신 설&gt;</p>	<p>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역할 및 기능을 겸한다.</p> <p>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도</li> </ol>

시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 기관·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시민건강생활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략)

④ (생략)

제10조(구성 등) ① (생략)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주민복지국장, 건설교통국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0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과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  
-----  
-----.

1. 건강도시 관련 분야의 공무

<p><u>장, 보건소장</u></p> <p><u>2. 건강도시 관련분야의 교수</u> <u>및 전문가</u></p> <p><u>3. (생략)</u></p> <p><u>④ ~ ⑥ (생략)</u></p>	<p><u>원, 교수 및 전문가</u></p> <p><u>&lt;삭제&gt;</u></p> <p><u>2. (현행 제3호와 같음)</u></p> <p><u>④ ~ ⑥ (현행과 같음)</u></p>
--	---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39호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을 “시장은”으로, “국민”을 “시민”으로 한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u>국</u>  <u>가</u>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u>국민</u>의 이해를 돕기 위하                      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11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u>시</u>  <u>장은</u>-----                      -----<u>시</u>  <u>민</u>-----                      -----.</p>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40호

군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

군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41호

###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물재배 또는 재배를 위한 시설사업 : 식용작물, 원예작물, 공예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 관상식물 등

제3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제4호, 제10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축사육 또는 사육을 위한 시설사업 : 대가축, 중소가축, 특수가축 등
4. 어류양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사업 : 양식업, 어업어선, 기타 수산시설 등.
10. 농산물 저장 및 가공에 관한 시설 및 사업
14. 농어업 6차산업화를 위한 사업 및 운영자금

제6조제2항 중 “연3퍼센트”를 “연2퍼센트”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한다. 다만, 담보금액이 부족할 때는 군산시에 거주하는자로 연대 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연체이자 는 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부받은 융자금으로 본다.

제3조(융자금의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아 상환중에 있는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p> <p>1. <u>식량작물 : 쌀·보리·밀·감자 등</u></p> <p>2. <u>원예특용작물 : 시설채소·화훼·원예·유실수 등</u></p> <p>3. <u>축 산 : 한우·낙농·양돈·양계·양·사슴·벌꿀·조수 등</u></p>	<p>제3조(융자대상사업) ----- ----- -----.</p> <p>1. <u>작물재배 또는 재배를 위한 시설사업 : 식용작물, 원예작물, 공예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 관상식물 등</u></p> <p>&lt;삭 제&gt;</p> <p>3. <u>가축사육 또는 사육을 위한 시설사업 : 대가축, 중소가축, 특수가축 등</u></p>

4. 수 산 : 양어장 · 양식사  
업, 수산시설 등.

5. ~ 9. (생 략)

10. 농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11. ~ 13. (생 략)

14. 기타 생산소득사업 등

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  
(생 략)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3퍼  
센트로 한다.

제7조(대부신청) ①·② (생 략)

③제2항의 연대보증인을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보증으  
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②  
(생 략)

<신 설>

4. 어류양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사업 : 양식업, 어업어  
선, 기타 수산시설 등.

5. ~ 9. (현행과 같음)

10. 농산물 저장 및 가공에 관  
한 시설 및 사업

11. ~ 13. (현행과 같음)

14. 농어업 6차산업화를 위한  
사업 및 운영자금

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  
(현행과 같음)

②-----연2퍼센  
트-----.

제7조(대부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융  
자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  
하여야한다. 다만, 담보금액이  
부족할 때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자로 연대 보증인을 세울 수 있  
다.

제11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체이자는 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42호

군산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

군산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43호

###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군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군산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1. <u>관할 지역 내 물 수요·공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u></p> <p>2. <u>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u></p> <p>3. <u>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u></p> <p>4. <u>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 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u></p>	<p>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 ----- ----- ----- ----- ----- ----- -----</p> <p>1. <u>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u></p> <p>2. <u>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u></p> <p>3. <u>군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u></p> <p>4. <u>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u></p>

<p>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 유지 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p>	<p>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군산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p>
<p>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p>	<p>&lt;삭 제&gt;</p>
<p>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p>	<p>&lt;삭 제&gt;</p>
<p>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p>	<p>&lt;삭 제&gt;</p>
<p>9. (생략)</p>	<p>6. (현행 제9호와 같음)</p>
<p>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법 제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한다)은 다음과 같다.</p>	<p>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 ----- ----- ----- ----- ----- ----- ----- -----</p>
<p>1. ~ 7. (생략)</p>	<p>1. ~ 7. (현행과 같음)</p>
<p>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p>	<p>&lt;삭 제&gt;</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44호

###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의 3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조의 3(수탁자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자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3. ② 위원회는 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무원이 아닌 학계 전문가, 하수처리시설 전문가, 민간위탁전문가, 공인회계사, 변호사, 시민대표 등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4.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⑤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7. ⑥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해산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45호

###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 2(수탁자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자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무원이 아닌 학계전문가, 하수처리시설 전문가, 민간위탁전문가, 공인회계사, 변호사, 시민대표 등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선정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해산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46호

###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산시립도서관, 분관(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임피채만식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군산시립도서관(본관,늘푸른도서관,설림도서관,임피채만식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한다))”로 한다.

제2조 제2호 중 “군산시립도서관(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임피채만식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과 작은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 “제7호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을 말한다“를 신설한다.

제3조 제1호 중 “군산시립도서관”을 “군산시립도서관(본관)”으로 한다.

제5조 “도서관의 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12조 ①항 중 “시립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제13조 “시립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2조 ③항 중 “사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를 “도서진흥계장이 된다”로 한다.

제25조 9 ~13호 신설한다.

9. 산단작은도서관 :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

10. 노인종합복지관 작은도서관 : 군산시 둔매미길 29

11. 수미작은도서관 : 군산시 수송동로 20
12. 서수작은도서관 : 군산시 서수면 탑천로 596
13. 평화작은도서관 : 군산시 오룡로 9

제30조 ③항 중 “자료운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를 “분관운영계장이 된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군산시립도서관 : 군산시 축동로 72

제5조(입관의 제한)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관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입관 후라 할지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① 시립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사용료·수수료)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자 및 자료의 복사, 인쇄 등을 하는 자와 문화강좌를 수강신청한 자의 사용료와 수수료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22조(회의 등)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25조(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8 같음

9 ~ 13 (신설)

1. 군산시립도서관(본관): \_\_\_\_\_

제5조(입관의 제한) 관장-----  
-----.

제12조(사용허가) ① 도서관 -----  
-----  
-----  
-----.

제13조(사용료·수수료) 도서관 -----  
-----  
-----  
-----.

제22조(회의 등) ③ -----  
----- 도  
서진흥계장이 된다.

제25조(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  
-----.

9. 산단작은도서관 : 군산시산단남북로 100

제30조(자문위원회의 회의)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수 있으며, 간사는 자료운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10. 노인종합복지관 작은도서관 : 군산시 둔배미길 29

11. 수미작은도서관 : 군산시 수송동로 20

12. 서수작은도서관 : 군산시 서수면 탐천로 586

13. 평화작은도서관 : 군산시 오룡로 9

제30조(자문위원회의 회의) ③ -----  
-----  
-----분관운영계장이 된다.

[별표 2]

**수 수 료** (제13조 관련)

구 분	규 격	기 준	금 액(원)
자료 복사료	A4	1매	40
	B4	1매	40
프린터 사용료	A4	1매	50
문화강좌	1월	1월 4주	10,000원
데이터베이스 이용수수료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보상금 기준에 따름		

※ 문화강좌 재료비와 교재비 본인 부담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47호

###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어린이 행복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규정한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 행복도시”란 어린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함으로써 어린이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행복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어린이 행복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어린이 행복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행복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행복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군산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어린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행복도시의 조성 기준)** 시장은 어린이 행복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어린이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2.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어린이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어린이는 교육·여가·문화생활·현장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어린이는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성숙한 시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6. 어린이가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를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①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행 편의
2. 어린이의 안전성 검토
3. 어린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대
4.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6. 어린이 동승차량 전용 주차구역 설치

② 그 밖에 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어린이가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환경 및 범죄 예방 안전망 구축
2.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어린이 건강증진)** 시장은 어린이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어린이 행복도시 구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심의한다.

1.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행복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행복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민·관 공동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1. 어린이 행복도시 구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어린이·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3. 시의원
4. 사회복지,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5. 학부모 대표자 등 시민대표
6. 어린이 행복도시 유관기관 공무원

④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어린이·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시의원,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3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어린이 행복도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17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48호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당"이란 보훈수당을 말한다.
2. "단체"란 보훈단체를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지급액) ①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선순위 유자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 시 그 미망인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미망인

② 다음 대상자는 지급에서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의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외자로 통보된 자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월5만원으로 한다.

제4조(지급신청) ① 수당지급신청은 제2조 규정에 따른 보훈단체를 통하여 일괄 신청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보훈수당지급신청서를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접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보훈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한다.

제5조(수당지급)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당지급은 신청한 그 달부터 분기별로 지급하고,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지급대상 단체별 신청내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후 회원 개인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단체의 대표는 회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 보고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의뢰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전출 등 지급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수시로 파악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49호

##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4.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4조(책무) ① 군산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②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와 감독을 연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복지법」 제25조 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 관련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보호, 부모 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기관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설치) ①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군산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연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

제8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기본정책
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연대에 보고를 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① 시장은 주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복지법」 제25조 2항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아동의 연령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

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홍보) ①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분기 1회 이상 열린시정, 지역신문, 유선방송, 전문기관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아동학대 유형별 증감추이와 처리실적, 아동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아동정책 모니터링)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 및 아동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연1회 실시하며, 그 결과를 지역연대에 보고하고 처리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제14조(아동학대 예방의 날)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